2023 - 6호(6. 23.)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재정 정보

이 자료는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근의 입법·재정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전 라 북 도 의 회 사 무 처
Jeollabuk-do Provincial Assembly

차 례

【 입 법 분 야 】

Ⅰ.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안

1.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 1
2. 강원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8

Ⅱ. 법령 해석 사례

1. 창고시설만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용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 등 관련) ····· 15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주택도시공사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 18

Ⅲ.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지방자치법」(2023년 3월 21일 법률 제192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년 9월 22일 시행예정인 것을 말함)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익산시장이 익산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23
2. 법령상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령의 근거 없이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3호 관련) ····· 25

차 례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1. 프랑스의 이민정책 관련 입법례 ····· 29

Ⅴ.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 행정자치위원회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39
2.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41

□ 환경복지위원회

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 44

□ 농산업경제위원회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 45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45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47
2.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49

□ 교육위원회

1.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입법예고 ····· 51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52

차 례

【 재 정 분 야 】

Ⅵ. 재정 동향

1. 경착륙(硬着陸), 시작되다(현대경제연구원) ····· 59
2. 초저출산현상 극복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 ····· 67
3.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도와 정책 논점(국회미래연구원) ····· 75
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부산의 대응(부산연구원) ····· 81
5.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시사점(보험연구원) ····· 84

Ⅶ. 타 시·도 최근 시책

1. 도단위 전국 최초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완료(경상남도) ····· 89
2.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국 최다(전라남도) ····· 91
3. 초보 엄마아빠의 육아 고민을 덜어줄 원스톱 육아 정보서 발간(서울시) ····· 92
4.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나선다(광주광역시) ····· 94
5. 올 하반기 중 사고도구어 활용 '온생각' 시스템 보급(충남교육청) ····· 96

Ⅷ.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대학혁신지원(R&D)의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 반영 필요(교육위) ····· 99
2. 계기성 행사 사업의 구체적 계획 수립 미흡 문제(문화체육관광위) ····· 104
3. 예비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 및 현 회계연도 집행내역 제출 필요(기획재정위) ····· 106

Ⅸ.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1.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 실태 ····· 113

Ⅰ.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안

Ⅰ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안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박재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0

발의연월일 : 2023년 5월 31일

발 의 자 : 박재용・최종현・김재훈
안광률・김성수(안양1)
남종섭・최만식・황세주
이기환・이인규・이채명
이용욱・박상현・서현옥
이영희・김동영・전자영
이병숙・황대호・김태희
임창휘・박세원・조용호
최 민 ・장민수・강태형
문승호・김동희・김종배
김옥순・김진경・윤재영
이제영・이혜원 의원(34명)

1. 제안이유

○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경기도 장애인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장애인 기회소득 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지원 신청, 중지, 환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장애인 기회소득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교육 및 홍보, 포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경기도 장애인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가치활동”이란 장애인의 사회 참여활동, 건강 유지 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장애인 기회소득”이란 가치활동을 하는 장애인에게 그 활동 정도에 따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
3. 장애인 기회소득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교육·홍보
5.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하여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가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으로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연령,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여 그 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 기회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치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고, 일시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회소득을 일시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자 등 공개)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① 본인 또는 대리인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장애인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 복지대상자 증명서
5.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서류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전출,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장애등록이 취소되는 등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1조(장애인 기회소득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장애인 기회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의 실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4. 장애인 기회소득에 관한 도민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1.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2. 경기도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 유형별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장애인

4.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인 사람

5. 사회복지·경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대학교수 및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 기회소득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에게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거나 사임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비위사실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한 경우

제15조(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에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나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장애인 기회소득 및 가치활동 활성화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 기회 소득, 가치활동 전파, 사업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 등을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복지국” 중 “장애인복지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장애인 복지과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실태조사 사무	
	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시설 운영 실태조사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무	
	2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 접수 등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조례」제5조
	3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지원중지 및 환수	같은 조례 제6조
		○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사무	
	4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 신청 접수 등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지원 조례」제9조
	5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 지원중지 및 환수	같은 조례 제10조

강원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용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229

발의연월일: 2023. 4.

발 의 자: 김용래 · 이승진 의원 (2명)

찬 성 자: 김정수 · 문관현 · 박대현 박호균 · 심오섭 · 원제용 전찬성 · 최승순 · 최재민 최재석 의원 (10명)

1. 제안이유

강원도 학생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권자이자 유권자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2.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3.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5. 참정권교육의 실시, 프로그램 개발,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6.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정권교육”이란 학생이 주권자로서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정치, 정당, 법규, 선거, 투표 등에 대한 지식 · 가치 · 태도를 함양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2. “학생 유권자”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인정된 18세 이상의 학생을 말한다.
3. “학교”란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① 교육감은 참정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정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담당부서 등 기반 구축
4.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연구 · 개발 · 평가
5. 참정권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
6. 관계 기관 교류 · 협력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학교 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건의를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2. 참정권교육 추진 방안
3. 관계 기관 교류 · 협력 및 교육 기부
4.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참정권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기능은「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강원도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참정권교육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학생의 연령에 맞는 참정권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관련 교과 등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참정권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선거기간 및 선거일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과 시기, 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프로그램 개발) 교육감은 토론, 각종 매체 활용, 모의의회 구성, 선거체험 활동 등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교원연수)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참정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참정권교육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매년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유권자 현황을 파악하여 참정권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참정권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 강원도의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법령 해석 사례

Ⅱ 법령 해석 사례

1. 창고시설만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용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 등 관련)

[법제처 23-0081, 2023. 5. 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5조제1항제8호에서는 개발부담금(각주: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 중 하나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8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창고시설(이하 "창고시설"이라 함)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公簿上)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개발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창고시설만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각주: 그 사업의 내용에 창고시설의 부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등도 별도로 받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이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창고시설만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우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사업을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라, 그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 제8조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등을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토지 개발사업이 아닌 '시설의 설치사업'까지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표 제7호에서와 같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개발이익환수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에 따른 '용지조성사업' 역시 '토지의 개발사업'일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4두43158 판결례 참조)

그런데 창고시설 설치사업과 창고시설의 용지조성사업은 원칙적으로 구분되는 사업이고, 창고시설의 부지조성을 함께 시행하지 않고 창고시설 설치만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이는 어디까지나 '시설의 설치 사업'일 뿐, '토지 개발사업'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에 따른 '용지조성사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각주: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4두43158 판결례 참조)이 개발이익환수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이익부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부담금의 일종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4조 본문에서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개발부담금 부과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

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각주: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4두43158 판결례 참조)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창고시설만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주택도시공사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법제처 23-0331, 2023. 5. 31., 행정안전부]

【질의요지】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함)의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함)은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도등”이라 함)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도등의 조례로 지방주택도시공사(각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정하고, 시도지사등이 지방주택도시공사에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주택도시공사(이하 “수탁기관”이라 함)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합니다.

【이유】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는 청원기관 중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법률 및 대통령령은 “법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조에서 청원사항으로 피해의 구제(제1호) 및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제4호) 등 청원기관의 고권적 권한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조제3호에서 “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수탁자로 ‘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같은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행정권한의 위탁’에는 행정업무(사무)의 민간위탁(각주: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2) p.491-495 참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 시도지사등이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시도등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에 따라, 시도지사등이 시도등의 조례로 정한 지방주택도시공사에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청원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그 위임·위탁받은 권한 행사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이 청원한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그 수임·수탁 기관이 청원기관으로서 그 청원사항까지 직접 처리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시도지사등이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도등의 조례로 정한 지방주택도시공사에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청원기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청원법」 제4조제3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청원법」 제3조는 청원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3호로 「청원법」을 전부개정하면서 마련된 규정이므로(각주: 2004. 8. 7. 의안번호 제170258호로 발의된 청원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청원기관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업무를

위임 · 위탁받은 수임 ·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위임 · 위탁받은 권한이나 업무의 범위에서 ‘행정청’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점(각주: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2119 판결례 및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3776 판결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합니다.

Ⅲ.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Ⅲ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지방자치법」(2023년 3월 21일 법률 제192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년 9월 22일 시행예정인 것을 말함)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익산시장이 익산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의견23-0108, 2023. 5. 16., 전라북도 익산시]

【질의요지】

「지방자치법」(2023년 3월 21일 법률 제192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년 9월 22일 시행예정인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지방자치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익산시장이 익산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익산시장이 익산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각 호에서는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제2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제3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제4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익산시장이 익산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서는 인사청문의 요청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면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실제로 인사청문을 요청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맡겨놓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같은 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한 규정으로도 확인되며, 이와 달리 인사청문의 대상 직위를 특정하여 그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을 의무화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의 위임 없이 직위를 특정하여 그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3. 3. 10. 의견제시 23-0037 참조).

따라서,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익산시장이 익산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법령상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령의 근거 없이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3호 관련)

[법제처, 의견23-0110, 2023. 4. 28., 부산광역시교육청]

【질의요지】

법령상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령의 근거 없이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의견】

법령상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령의 근거 없이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하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는 "대행"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교육감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원권한자인 교육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1조에서는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행"에 관한 규정은 보이지 않는바, 이 사안은 법령상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령의 근거 없이 공공기관이나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업무의 대행”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원(原)권한자인 행정기관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행”은 행정기관인 교육감의 법령상 사무를 대행기관인 공공기관이나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원권한자인 교육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행정업무의 대행”에 해당할 것이고, 이러한 대행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법적으로 이전하여 행정권한을 수탁 받은 공무수탁자가 그의 이름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정권 행사의 법적 효과 또한 공무수탁자에게 귀속되는 민간위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11. 8. 1. 의견제시 11-0150 참조).

대행의 경우 대행을 받은 자가 대외적으로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인 피대행관청의 이름과 책임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국민이나 주민이 대행을 하고 있는 대행기관을 행정기관으로 오인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법령에 그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3. 10. 25. 13-0417 해석례 참조),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법령에서 교육감이 수행하도록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교육감이 아닌 법인 · 단체 등이 대행하게 하려면 그 대행에 관해서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0. 2. 3. 의견제시 20-0009 참조).

따라서 법령상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령의 근거 없이 공공기관이나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프랑스의 이민정책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 제223호, 강명원)

□ 배경

○ 우리나라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설정한 '다문화·다인종' 국가 편입 기준(전체 총인구 대비 5%이상)에 근접한 약 220만여 명으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14.8%가 증가하였다.

○ 우리나라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집행중인 이민정책을 효율화하고 우수 외국인력 유입확대를 위해 2023년 상반기 내에 법무부 외청 형태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민 관련 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이민정책연구원>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일부개정(2023년 4월 18일)으로 설립 근거를 갖추었으나, 관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예산에 한계가 있다.

○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인 프랑스는 이민정책 및 행정 등의 처리를 위하여 <프랑스 이민·통합사무청(OFII)>을 두고 있고, 다양한 이민정책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 이민·소수자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난민권 법전」을 개정하고, 「국립인구통계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1986년3월12일 제86-382호 법규명령」을 제정하였다. 이제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려는 우리나라에게 이민 선진국인 프랑스의 이민행정과 연구기관 운영 사례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관련 법률: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법률 제18793호)」

□ 도입

○ 우리나라의 연도별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 장·단기 체류중인 외국인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200만 명 이상으로 집계(2021년 제외, Covid-19 바이러스 유행)되고 있으며, 2030년에는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체류 외국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인구	51,826,059	51,849,861	51,829,023	51,638,809	51,439,038
체류외국인	2,367,607	2,524,656	2,036,075	1,956,781	2,245,912

* 출처 : 법무부 사이트(moj.go.kr) 2023년 5월 기준

○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교육, 복지, 외교 등 다수의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예산 집행의 중복 등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외청 형태로 출입국 및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2023년 상반기 내에 신설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민 정책 관련 조직의 구성과 적절한 예산 배분 등 기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고려가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 특히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일부개정(2023년 4월 18일)을 통하여 이민 관련 정책을 연구하게 될 <이민정책연구원>의 법적인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음에도, 이민법제와 정책, 국민통합 및 이민자 차별방지 등 관련 현안에 관해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관련 연구예산은 OECD 국가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

○ 일찍이 프랑스는 1800년대 후반부터 대규모의 이민 인구를 받아들인 국가로서 2022년 기준 700만 명으로 총인구의 12.8%를 차지하며, 1945년부터 노동부와 보건부의 감독을 받는 국립이민국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현재는 내무부 산하 조직인 <외국인사무국>, <프랑스 이민·통합 사무청>과 <국립 이민·소수자 연구센터>를 통해 이민 행정·통합 정책 추진 및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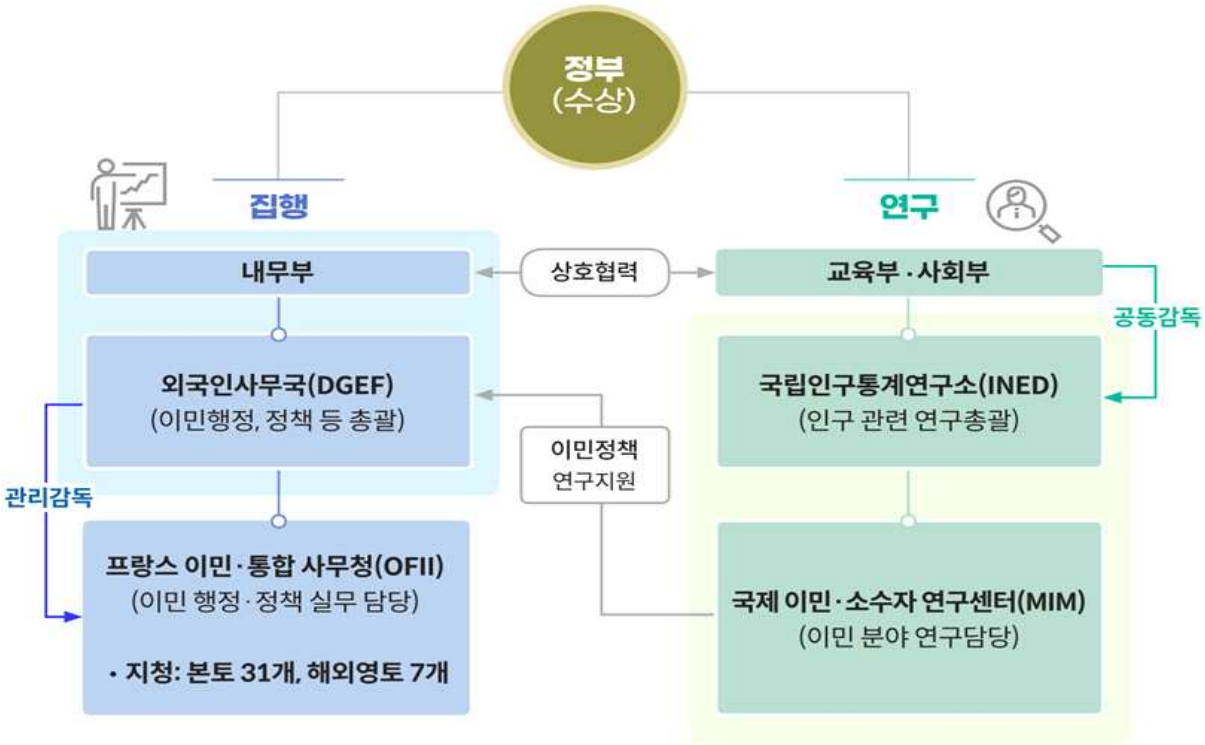
□ 프랑스의 이민 행정 · 연구기관

1. 이민정책 집행 및 연구 조직체계

○ 프랑스의 이민정책과 관련된 집행은 내무부 소관이며, 연구는 교육부와 사회부의 공동책임으로 운영하고 있다. 집행 실무는 내무부 내 <외국인사무국>의 감독 아래 <이민·통합 사무청>이 담당하고, 연구 실무는 <국립인구통계연구소>내 <국제 이민·소수자 연구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 프랑스의 내무부와 교육부·사회부는 이민 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 관계에 있으며, <국립인구통계연구소>는 이민정책 관련 분야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내무부 내 <외국인사무국>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1 프랑스 이민정책 집행 및 연구 조직체계



2. 이민정책 집행기관

(1) 프랑스 내무부 내 외국인사무국: 이민 행정·정책 등 총괄

○ 프랑스 내무부에 속해 있는 7개 사무국(국가경찰, 치안, 위기관리 등) 중 하나인 외국인사무국은 이민, 난민, 통합 관련 행정 및 정책 등을 총괄하고 있으며, 이민 관련 행정·정책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프랑스 이민·통합 사무청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⑵ 프랑스 이민·통합 사무청: 이민 행정·정책 등 실무담당

○ **(임무)** 프랑스 이민·통합사무청은 가족이민 지원, 이민자 수용 및 통합 지원, 귀환 및 재통합 지원, 난민 신청자 지원, 직업이민 지원, 사회적 결속 및 평등한 기회 지원 등의 실질적인 이민 행정·정책 및 통합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인력구성)** 이민 행정·정책 등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프랑스 이민·통합 사무청의 중앙조직은 2023년 5월 기준, 총 26명(청장 1명, 부청장 2명, 부서장 8명, 의회의원 2명, 적격인사 4명, 근로자대표 2명, 자문위원 3명, 직원 4명)이며, 공무원 외에도 행정, 노동, 지리, 교육, 경제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산하 지방사무청은 프랑스 본토에 31개, 해외영토에 7개로 총인원 약 1,200명이 근무하고 있다.

○ **(예산)** 프랑스 이민·통합 사무청의 임무와 관련된 예산은 2022년 기준 약 7억 4천만 유로이며, 이러한 예산은 주로 프랑스 이민·통합사무청이 징수하는 세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납부하는 세금, 「노동법전」에 규정된 특별기부금, 국가 또는 기타 공공기관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⑶ 관련 입법

○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난민권 법전」 제R121-1조~제R121-27조)

- 프랑스 이민·통합 사무청은 내무부의 이민·통합 담당 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 프랑스 이민·통합사무청은 이민 및 통합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고, 난민 신청자의 수용 정책을 시행하기 우해 사법이 적용되는 법인에 계약에 따라 이러한 관리를 위임할 수 있으며, 내무부를 대신하여 난민 신청자와 난민을 위한 국내 수용시설 제공을 보장한다. 또한, 주요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민간 또는 공공기관, 특히 지방자치단체, 민간 비영리 단체 등과 상호협력할 수 있다.
- 프랑스 이민·통합 사무청의 운영을 실제로 관리·감독하는 관리이사회는 청장과 2명의 의회 의원 외에 15명의 위원(고나련 담당장관 8명, 「공공부문 민주화와 관련된 1983년 7월 26일 제83-675호 법률」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 대표 2명, 이민 및 통합을 담당하는 장관이 임명한 5명의 적격 인물)으로 구성된다.

3. 이민정책 연구기관

(1) 국립인구통계연구소: 이민 등 인구 관련 연구 총괄

○ **(법적 지위)** 국립인구통계연구소는 이민 관련 연구를 하는 국제 이민·소수자 연구센터의 상위기관으로 사회부의 사회문제 담당 장관과 교육부의 연구 담당 장관의 공동 감독을 받고 있는 과학적이며 기술적 특성을 가진 공공기관이다.

○ **(임무)** 자체 계획 또는 타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연구를 수행, 개발 및 장려한다. 인구통계학에 유용한 모든 연구와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 수행한다.

○ **(조직)**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2개의 이사회(관리이사회, 과학이사회) 및 3개의 위원회(평가위원회, 윤리위원회, 편집위원회)와 국제 이민·소수자 연구센터를 포함한 14개의 연구센터 등 총 2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국제 이민·소수자 연구센터: 이민 관련분야 연구 담당

○ **(조직)** 국제 이민·소수자 연구센터는 이민 행정, 정책, 통합 등 다양한 이민 관련분야에 관해 세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조직(총인원 31명)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학계 등과도 연계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인적 구성 및 주요 연구분야는 [표2]와 같다.

표 2 국제 이민·소수자 연구센터(MIM) 구성

직책	주요 연구분야
책임연구원 (2명)	• 이민 및 교육사회학, 사회 계층화와 불평등의 사회학, 국제 비교 등
	• 이민 및 소수자, 경제활동인구 등
연구위원 (10명)	• (연구센터장) 이민, 사회인구학, 소수민족, 차별, 인종별 통계 등
	• 이민 및 소수자 등
	• 이민(사회 계층화), 인종(사회적 공간 이동성), 건강, 행정 데이터 등
	• 이민, 귀환, 성별, 지역별 연구(프랑스, 영국, 서인도제도) 등
	• 이민, 통합모델, 다양성, 문화정책, 국제 비교(유럽, 북미) 등
	• 이민과 노동시장, 식민지 사회, 민족·인종 경계 등
	• 민족·인종 차별, 이민자의 자녀 등
	• 이주 및 이민, 인구 고령화, 유산 상속 등
	• 노동시장에서의 성별·민족 차별, 가정과 직업의 상관관계 등
	• 다국적 가족, 이산가족 상봉, 이민과 도시화, 이민가족 통합 등
부연구위원(4명)	• 이민 및 소수자 등
연구보조원 (박사후과정 3명, 박사과정 8명)	• 이민가정 및 자녀교육과 소수자, 차별 등
초빙연구원(4명)	• 이민자 후손(북아프리카) 및 이민자 가족, 종교, 문화 등

* 출처 : 프랑스 국립인구통계연구소 사이트(https://www.ined.fr)

○ **(임무)** 국제 이민·소수자 연구센터는 이민이 개인과 출신 사회 및 이민 정착 국가에 미치는 영향, 예컨대 이민 이유와 방법, 이민인구의 통합 과정, 차별현상과 방지, 소수민족, 사회 인구학적 역학 및 정체성 형성 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예산)** 국립인구통계연구소 예산은 약 3천만 유로(한화 약 435억)로 정부 예산과 일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며, 이 중 일부를 국제 이민·소수자 연구센터의 인건비, 연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3) 관련 입법

○ 「국립인구통계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제86-382호 법규명령」

- **(조직)** 국립인구통계연구소장은 연구소 내 과학위원회와 협의한 후 연구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센터를 창설할 수 있다.
- **(임기)** 연구센터의 센터장은 과학위원회와 협의한 후 5년의 임기로 국립인구통계연구소장이 임명하며,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 **(주요 재원)** 국립인구통계연구소에 속한 국제 이민·소수자 연구센터의 예산은 국가 또는 지방 당국의 보조금, 국가 또는 민간, 외국 및 국제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한 수익금, 자산관리 수익금, 기부 및 유산, 출판물 판매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 시사점

○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인구 고령화 등으로 꾸준히 외국인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이민 관련 정책은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 집행되고 있어 비효율적이며, 이민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관련 연구예산도 충분하지 않다.

○ 프랑스 이민·통합 사무청은 이민자 수용, 지원 및 통합을 위한 행정, 정책 등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단일 행정기관으로, 합리적 판단 및 결정을 위해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 근로자대표 및 대학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 또한,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난민권 법전」에 프랑스 이민·통합 사무청이 징수하는 세금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납부하는 세금, 「노동법전」]에 규정된 특별기부금, 국가 또는 기타 공공기관의 보조금 등을 이민 행정・정책 등을 위한 예산으로 규정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 프랑스는 일관성 있는 이민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규명령에 근거하여 관련 연구조직인 국제 이민・소수자 연구센터를 두고 있으며, 안정적인 연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의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계획과 더불어 법적 설립 근거가 마련된 〈이민정책연구원〉의 연구인력 운용과 적절한 연구 예산편성을 위한 법령 정비 시 참고가 될 수 있다.

Ⅴ.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Ⅴ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 행정자치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6. 8.] [법률 제19427호, 2023. 6. 7., 전부개정]

◇ **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에 규정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등의 해석상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마련함(제10조제8항 및 제9항).

나.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다.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운영(제35조부터 제44조까지)

1) 도지사는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진흥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도지사는 산림이용진흥지구에서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등 산림 관련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라. 농업 · 식품산업 · 임업 등 진흥(제49조부터 제58조까지)

1) 도지사는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농촌활력촉진지구에 대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되, 도지사가 농촌활력촉진지구에서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총 면적은 농지감소율, 영농여건 등을 고려하여 4천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함.

3) 농촌활력촉진지구 및 권한이양 특례의 존속기한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함.

4) 「산지관리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개별법 적용의 특례를 둠.

마.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제59조부터 제69조까지)

1)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 등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

2)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권한이양 특례의 존속기한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함.

바.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1)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 · 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 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관할부대장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2) 국방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강원자치도의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보도록 함.

4) 국방부장관은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강원자치도 또는 관할 시 · 군의 공유재산과 미활용 군용지 등을 교환할 수 있음.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장혜영의원 등 14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06-05~2023-06-19)

◇ 제안이유

환경과 문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 등에 따라, 기존의 혈연 및 혼인 관계와 구분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관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69.7%)이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라 여길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모습의 가족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마련되지 못하여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혼인·혈연을 벗어나는 형태의 가족들을 배타적으로 차별하고 제도에서 밀어내는 효과를 낳습니다.

이에 혈연 또는 혼인 외의 이유로 형성, 유지되는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과 등록, 관계의 효력 및 이들의 의무와 권리 등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들이 법률적 보호를 받으며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되,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은 가정법원장에게,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은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성년이 된 사람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되, 혼인 중에 있는 사람, 생활동반자관계 중에 있는 사람은 다른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존의 가족관계와 생활동반자관계의 중복을 금지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생활동반자관계의 효력은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

기준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 당사자 쌍방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생기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쌍방이 해소에 합의를 하거나 일방이 해소를 원하는 경우,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 또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간 혼인이 성립한 경우에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해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9조).

사.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는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아.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교부 청구, 인터넷 또는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발급 및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의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 환경복지위원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6. 11.] [대통령령 제33517호, 2023. 6. 7., 제정]

◇ 제정이유

급변하는 수상레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민들이 수상레저 안전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957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의 작성 방법 및 기재사항,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압류등록·해제의 통지 방법, 동력수상레저기구 검사대행자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의 작성 방법 및 기재사항(제5조 및 별표 1)

등록원부는 동력수상레저기구별로 갑구(甲區)와 을구(乙區)로 나누어 작성·관리하되, 등록원부 갑구(甲區)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번호, 제원(諸元), 최초등록일, 최종 소유자 등의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乙區)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 등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기재하도록 함.

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및 등록 신청 서류의 보존기간 기준 마련(제8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는 그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신청 서류는 그 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과 관련된 서류를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함.

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압류등록 또는 압류해제의 통지(제9조제3항)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압류등록 또는 압류해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압류등록 또는 압류해제의 원인, 촉탁기관, 압류등록일 또는 압류해제일을 통지하도록 함.

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대행자에 대한 감독(제12조제4항 및 제5항)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그 대행업무의 실적을 매 반기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해양경찰청장은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확인 또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검사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대행자에 대한 관리 · 감독을 강화함.

「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7. 1.] [대통령령 제33480호, 2023. 5.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인증 · 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 제작자는 인증 · 변경인증의 배기소음 결과 값을 이륜자동차에 표시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소음 · 진동에 관한 자료의 수집 · 관리를 위하여 소음 · 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음 · 진동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50호, 2022. 12. 30.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이륜자동차 제작자가 인증 · 변경인증의 배기소음 결과 값을 이륜자동차에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1천만원, 2차 위반 시 1천5백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천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위반행위 횟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이전 차수의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60만원을 각각 가중하여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농산업경제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3. 6. 7.] [대통령령 제33510호, 2023. 6. 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였으나 입국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사육제한 1개월, 3차 위반 시 사육제한 3개월, 4차 위반 시 사육제한 6개월, 5차 이상 위반 시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및 가축사육의 제한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하여 사육제한을 명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4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06-05~2023-06-1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를 세울 때 식량자급률을 설정·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보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적정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는 것은 한 주권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안정에 밀접히 결부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로 목표치 달성 기간을 연장하거나 목표 자체를 하향 조정하는 등 식량자급률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게다가 식량공급의 기반이 되는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식량자급 목표의 달성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보전 정책의 수립 목적에 각각 식량안보의 확보와 식량자급률의 달성을 명시함으로써 농지가 식량안보 등과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보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 등).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6. 1.] [법률 제19425호, 2023. 6. 1., 제정]

◇ 제정이유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함

◇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 목적이 되는 주택을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정의함(제2조).

나.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또는 임차주택의 경매·공매가 개시되었거나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확보할 것,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제3조).

다. 이 법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제5조).

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경매 및 압류주택의 매각에 대한 유예·정지에 관한 협조 요청,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을 두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에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음(제10조 및 제11조).

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내에 피해사실의 조사를 마쳐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내용에 따라 안건이 상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하여야 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제15조).

아. 전세사기피해자는 경매나 국세, 지방세로 압류된 주택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매나 매각절차에 대해 유예 ·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경매나 매각절차에 대한 유예 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 · 관할 세무서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자 및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경매 유예 등을 할 수 있음(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자. 전세사기피해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 등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 등을 할 수 있으며, 법원 등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허가 등을 하여야 함(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차.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제23조 및 제24조).

카.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협의 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우선매수권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민사집행법」 제78조 또는 같은 법 제264조의 신청에 따른 경매나 「국세징수법」 제64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른 매각절차와 관련하여 경매 및 공매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제26조).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및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의 긴박한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7조).

하. 전세사기피해자,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를 포함한다) 등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봄(제28조).

거.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의 접수, 피해사실의 조사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함(제29조).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06-07~2023-06-21)

◇ 제정이유

우리나라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고, 항공 분야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는 국내운항 노선에만 적용되어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7개 항공사가 참여하고 있음.

그런데 2005년 유엔기후총회에서 국제항공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별도 관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총회에서 “국제항공 탄소상쇄 · 감축제도(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의 이행을 결의하였고, 그에 대한 국제표준 및 권장사항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로 개정 및 채택되어, 2021년부터 각 회원국은 자국 항공사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제출하고 기준선을 넘어서는 탄소배출량을 상쇄하도록 하는 등 해당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

그동안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기준선을 초과 배출한 항공사는 없었으나, 최근 국제항공 부문의 본격적인 회복 조짐에 따라 2024년부터는 기준선을 초과한 탄소배출량에 대하여 상쇄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함.

이에 우리나라도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상쇄·감축제도를 준수하고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상쇄·감축 및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항공기운영자 등을 이 법에 따라 국제항공 탄소를 상쇄·감축하여야 하는 이행의무자로 지정하고, 이행의무자는 승인받은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연간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9조).

다. 환경부장관은 이행의무자가 측정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의 표준방식에 부합하는 검증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8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이행의무자가 상쇄하여야 할 상쇄의무량을 산정하여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하고, 이행의무자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의무를 이행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운영자등 또는 검증기관에게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측정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이행의무자 또는 검증기관이 배출량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이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배출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18조).

□ 교육위원회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김병욱의원 등 28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06-01~2023-06-15)

◇ **제안이유**

향후 20년간 학령인구가 4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학교폭력, 기초학력 부진학생, 정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현재 학생들의 성장에 있어서 배움을 저해하는 원인을 해소하고 교육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 부처별·기관별 개별 사업 형태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의 중복, 사각지대의 발생 등으로 지원이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학생 정보에 대한 관리·연계·활용의 법적 근거가 없어 조기 발굴 및 장기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기관별·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연계하여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생이 학교 내외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복지·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회복을 위하여 학습·복지·상담 등을 통합한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지원 및 관리를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학교의 장이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요청을 받아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고, 교육복지, 심리상담, 학습지원교육, 긴급지원 등을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통합적으로 지원·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학력인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에게 교육정보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5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06-02~2023-06-1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규정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신설되었음.

그러나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등의 부작용 또는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 등에 대한 조사 · 수사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교육현장의 특성 등에 관한 교육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 수사 ·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조사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재정분야】

Ⅵ. 재정 동향

Ⅵ 재정동향

1. 경착륙(硬着陸), 시작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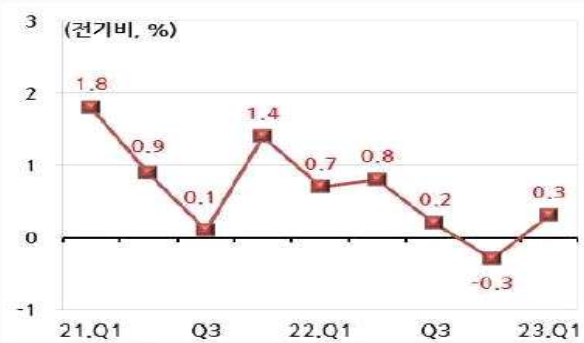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3년 2분기)-

-현대경제연구원(2023. 6.)-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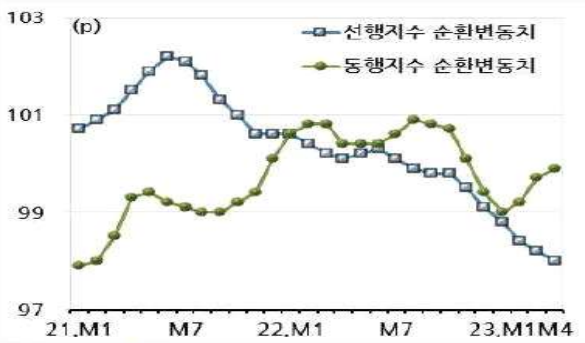
○ **(경제 성장력의 약화)** 한국 경제가 역(逆)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선행지수가 장기간 하락하면서 경기 하강이 지속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23년 1분기 중 투자와 순수출 부진에도 민간소비의 호조로 '22년 4분기의 역성장을 탈출하였으나 성장 속도는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23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22년 4분기의 △0.3%에서 0.6%p 증가한 0.3%로 반등하면서 역성장에서 탈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고정투자(성장기여도 △0.2%p)와 순수출(△0.2%p)이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민간소비 기여도(0.3%p)가 반등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반등하고 있으나, 향후 경기전환점(하강에서 상승)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 '21년 6월(102.2p) 정점을 형성한 이후 장기간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어 미래 경제 상황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 분기 경제성장률 >



자료: 한국은행.

<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 순환변동치 >



자료: 통계청.

□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1) 수요부문별 경기 동향

(소비절벽) 1분기 보복 소비 심리로 일시적 호조를 보였으나,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계 구매력 감소와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침체 국면으로 재진입하였다. 4월 소매판매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의 영향으로 전월비(△2.3%) 및 전년동월비(△1.1%) 모두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부문별로는 내구재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준내구재와 비내구재가 모두 감소하였다.

(ICT투자 침체) 전체 설비투자가 비록 반등하였으나, ICT투자가 크게 부진한 모습이다. 4월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하여 전월비 0.9%, 전년동월비 4.4%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설비투자를 견인하는 ICT 투자는 지난 1분기 전년동기비 △8.6%에 이어 4월에도 전년동월비 △18.9%로 침체 폭이 확대되었다. 한편,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 및 자본재수입액증가율이 소폭 반등세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건설 수주 불황 장기화) 4월에 들어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은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크게 급감하였다.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4월에 들어 민간 부문(전년동월비 19.3%)을 중심으로 15.8%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한편, 향후 건설 경기 상황을 예고해 주는 건설 수주액(선행지표)이 건설비 상승, 부동산 시장 위축, 자금 시장 경색 등으로 큰 폭의 침체를 시현하였다. 4월 공공 수주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5.3%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민간 수주가 58.8%나 감소하면서 전체 수주 증가율은 △50.6%로 급락하였다.

(수출 경기 장기 침체) 수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수출 시장과 품목들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5월 수출증가율은 전년동월비 △15.2%로 지난 10월(△5.8%) 이후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한편, 5월 수출 물량(△3.2%)과 수출 단가(△12.0%)가 동시에 감소하면서 전형적인 불황 국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별로는 5월 중 최대 시장인 對중국(△20.8%)으로의 수출이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對미국(△1.5%), 對EU(△3.0%) 등의 수출도 침체되는 모습이다. 품목별로는 5월 중 자동차(49.4%) 등이 증가하였으나, 반도체(△36.2%), 석유화학(△26.3%), 철강(△8.8%) 등 대부분 품목이 감소하였다.

(고용의 질적 악화) 서비스업과 노·장년층 중심의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으나, 제조·건설업 및 청년층·핵심연령층 일자리는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4월 중 전체 실업률은 2.8%로 전년동월(‘22년 4월 3.0%)에서 개선되었으며, 4월 확장실업률도 9.1%로 전년동월의 10.9%보다 하락하였다. 한편 4월 신규취업자(취업자 수 증감)는 전년동월비 35만 4,000명으로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증가 폭은 축소되었다. 특히, 4월 중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비)은 제조업 △9.7만 명, 건설업 △3.1만 명, 서비스업 46.5만 명으로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핵심경제활동 연령층(25~49세) 취업자수는 4월 전년동월비 △4.9만 명으로 지난 2022년 12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인플레이션 리스크 완화)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완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대 초반에 안착하였다. 4월 중 수입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크게 하락하면서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확연히 낮아지는 모습이다. 4월 수입물가는 자본재, 소비재 물가가 상승하였으나, 원재료 및 중간재 물가가 크게 하락하여 2월(전년동월비 △0.7%)과 3월(△6.9%)에 이어 전년동월비 △5.8%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또한 4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년 전 대비 전력・가스・수도・폐기물 물가가 급등하였으나, 농림수산품, 공산품, 서비스 품목들이 비교적 안정화되면서 상승률이 둔화되었다. 한편,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기・수도・가스 물가가 급등하였으나, 농축수산물이 하락하고 공업제품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2021년 10월(3.2%)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전년동월비 3.3%를 기록하였다

(소비 심리 개선) 고금리, 고물가로 투자 심리는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소비 심리는 예상 밖으로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8.0p를 기록하며 ‘22년 11월(86.7p)을 저점으로 개선 추세가 지속 중이다. 부문별로는 가계의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체감정도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 CSI가 4월 58p에서 5월 64p로 개선되었다. 한편, 기업심리를 보면 6월 중 전경련 BSI는 전월비 하락(5월 93.8p → 6월 90.9p)하였고 한은 BSI(전국/전산업/업황전망)는 소폭 상승(5월 74p → 6월 76p)하는 데에 그쳤다.

(2) 산업별 경기 동향

(전산업) 4월 전산업 생산(전월비)은 광공업이 크게 침체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도 둔화되면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제조업)** 생산이 감소하고 가동률이 급락하는 침체 국면이 진행 중이며, 출하가 급감하고 재고가 증가하는 전형적인 불황 국면이 지속 중이다. **(서비스업)** 그동안 산업 경기를 홀로 떠받쳤던 서비스업이 지난 3월(전월비, △0.5%)에 이어 4월에도 △0.3%의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빠르게 침체 중이다. **(건설업)** 건설업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4월 중 토목 부문과 건축 부문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 향후 경기 위험 요인과 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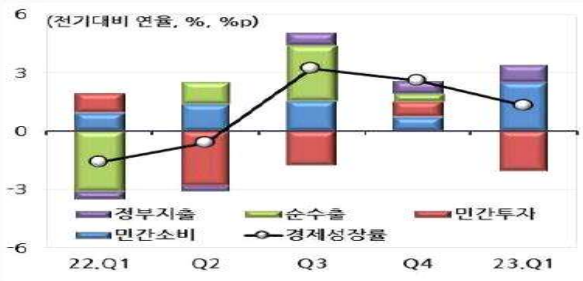
(1) 경기 방향성 결정 위험 요인

향후 한국 경제에는 ① 미국 경제의 침체 발생 가능성, ② 중국 시장의 불안정성, ③ 경제 성장의 유일한 버팀목인 소비의 향방 등의 경기 방향성 결정 요인이 존재한다

① 미국 경제의 침체 발생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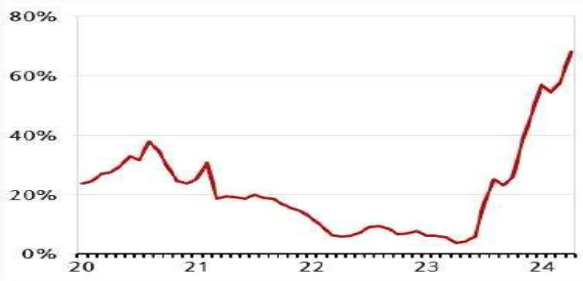
미국 경제가 아직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통화정책의 과잉대응(overkill)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국의 2023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비 연율 1.3%로 지난 속보치의 1.1%보다 상향조정된 바 있다. 이는 고용시장 호조로 가계의 소비 구매력이 위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한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금융시장 불안과 기업투자 침체가 나타나고 있어, 경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금리의 영향으로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기업 자금 시장의 경색이 지속되면서 민간 투자가 침체를 지속 중이다. 이에 따라 「투자 침체 → 고용 악화 → 가계 구매력 약화」 등을 통해 소비 위축이 나타나면서 향후 결국 미국 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 중이다.

< 미국 수요부문별 경제성장 기여도 >



자료: BEA.

< 미국 경기침체 확률(12개월 선행) >



자료: New York Fed.
주: 10년물-3개월물 국채 스프레드를 이용.

② 중국 시장의 불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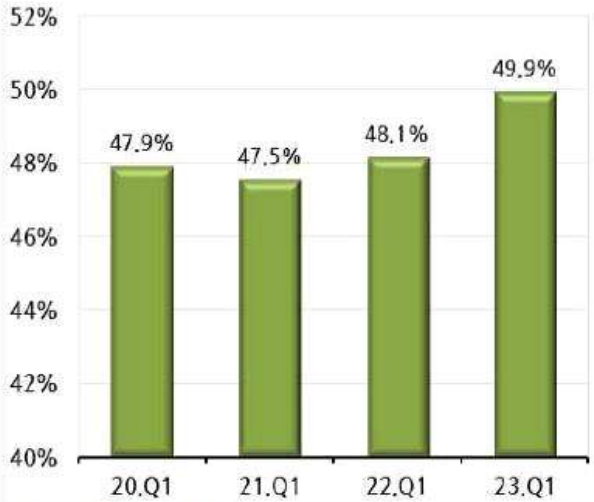
기대되었던 중국의 리오프닝(reopening) 효과가 미약한 가운데,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우리 수출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중국 경제 리오프닝의 영향으로 대다수의 실물 지표가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은 2022년 12월 전년동월비 △1.8%에서 2023년 4월에는 18.4%로, 산업생산 증가율도 같은 기간 1.3%에서 5.6%로 상승하였다. 다만,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중국 실물 지표의 회복 속도가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민간과 정부의 높은 부채와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구조적 문제의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대외신인도가 악화되는 모습이다. 2021년 헝다그룹 사태로 촉발된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민간 경제 주체들의 소비와 투자를 제약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CDS프리미엄은 올해 1월 말 50bp 내외에서 안정된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5월 말 현재 70bp 내외 수준으로 높아졌다. 한편, 위안/달러 환율은 최근 급격히 약세를 보이면서 중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달러 당 7위안을 상향 돌파(破七)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③ 경제 성장의 유일한 버팀목인 소비의 향방

현재 소비가 유일한 경기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경기 하강에 따른 소득 저하와 고금리에 따른 높은 이자 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가 예상외의 호조를 보이고 있다. 실질 가격 기준 2023년 1분기의 민간소비/GDP 비중은 49.9%로 최근 4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경제의 안전판이 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전반적인 소비심리가 크게 개선되고 특히 구매력이 높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평균소비성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2022년 11월(86.7p)이후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2023년 5월에는 98.0p로 기준치 100p에 근접 중이다. 그러나, 하반기에 예상되는 경기 하강 및 고금리로 가계의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소비의 경기 침체 방어 기능이 한계를 보일 가능성도 상존한다. 수출과 투자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계 부문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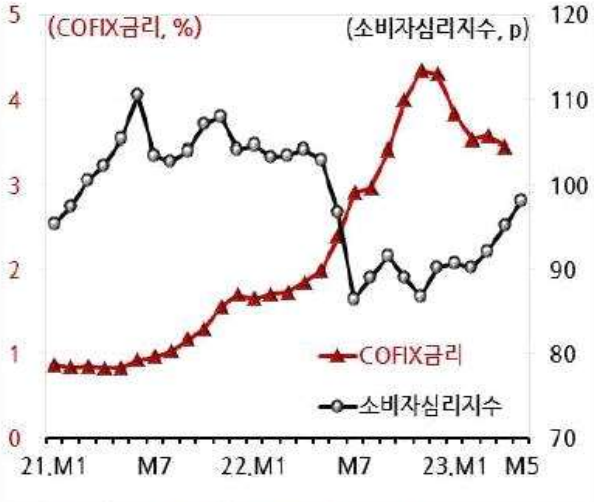
소득 감소에 따른 구매력 위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최근 시장 금리가 다소 하락하는 모습이나 연내 기준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경우, 시장 금리가 하방 경직성을 가져 높은 이자 부담으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약화될 수도 있다

< 민간소비/GDP 비중(실질가격) 추이 >



자료: 한국은행.

< COFIX금리 및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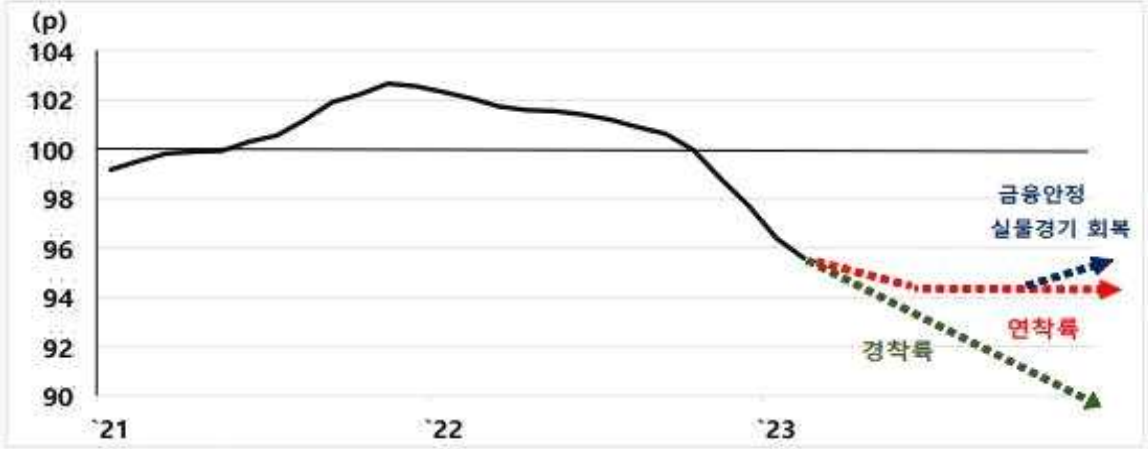
(2) 현 경기 판단 및 향후 경기 전망

(현 경기 판단) 2023년 2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그동안 경기를 방어하던 소비마저 위축되며 경착륙(硬着陸)이 시작되는 국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 경기는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주력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심각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투자도 부진한 모습이다. 특히, 보복 소비심리로 지난 1분기 경기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소비 부문이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로 그 한계를 나타내면서 내·외수 동반 침체가 진행 중이다.

(향후 경기 전망)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회복 시나리오(’U’자형, 상저하고)와 장기 침체 시나리오(’L’자형, 상저하저)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경로를 결정짓는 요인은 ‘수출 회복 시점 및 강도’와 ‘소비 안전판 역할 지속 기간’으로 생각된다. ’U’자형 상저하고 회복 시나리오는

수출이 빠르게 개선되고 동시에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적시성을 가지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동반될 경우, 경기 전환점이 마련되면서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는 경로이다. 반면 ’L’자형 상저하저 장기침체 시나리오는 하반기에도 수출 침체가 장기화되거나. 정부의 정책적 실기(失期)로 소비가 더 이상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하반기에 심각한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서 2024년까지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 시나리오별 부동산 경기 향방 >



자료 : KB국민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 HP필터를 통해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를 추세를 제거한 이후 100p로 표준화.

□ 시사점

○ 수출과 내수 모두에서 경제 성장의 동력을 상실하면서, 우려되었던 바와 같이 한국 경제가 ‘경착륙(硬着陸)’ 국면으로 진입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전개되는 불황의 진폭을 줄이고 불황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노력이 시급하다.

첫째, 경제 철학이나 경제 이론에 대한 ‘집착’보다는 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유연한 경제 정책 기조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내수 불황 국면의 시작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소비 시장 활성화 노력이 시급하다.

셋째, 수출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통상·외교에서의 불확실성 완화 및 차별적 시장 접근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국내외 시장 불확실성 증폭, 자금 시장 경색 등의 경영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기업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투자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저성장·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사회 양극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사회 안전망의 정비와 확충을 통해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

2. 초저출산현상 극복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아시아브리프/2023. 5.)-

□ 한국의 출산율은 어디가 바닥인가?

○ 0.78명!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다. 인구가 증가나 감소하지 않고 고령화도 되지 않는 이른바 안정인구(Stable Population)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서 장기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1/3 정도만 인구를 대체할 수 있는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고 고령화될 것이다.

○ 이와 같은 인구학적 재생산(Reproduction) 붕괴는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다. 이론들에 따르면 출산율이 0명에 이를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이스터린(Easterlin, 1978)의 상대적 소득가설(Relative Income Hypothesis)에 의하면, 부부가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출산을 주저하게 되는데, 기대되는 상대적인 소득과 자원에 따라 출산율은 0명까지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베커의 신가정경제출산력모형(New Home Economics Model of Fertility)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만족은 자녀의 수가 아닌 자녀의 질을 통해 추구하는데 자녀 양육에는 보다 많은 시간 투입이 요구된다. 인적자본이 중시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시간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자녀 양육보다 시간이 덜 소요되는 것들을 선호하게 된다.

□ 한국 초저출산의 원인구조

○ 한국에서 재생산 위기는 '결혼'에서부터 시작된다.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권, IT(Information Technology) 강국 등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통적인 가부장적 유교문화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법률에 따르지 않는 가족 형성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출산은 법률혼을 전제로 발생한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각종 조건을 충족시킬 때 가능하다. 학력, 학벌, 안정적 직장, 주거 등이 갖추어져야 결혼을 할 수 있고, 결혼 후에도 안정적인 가족생활이 가능하다. 그만큼 청년들은 '출산'에 앞서 '결혼'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결혼의 관문을 통과하기 어려워지면서 만혼 경향이 증가하고,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비혼도 증가하고 있다.

○ 과거와 달리 결혼과 출산 간 연계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결혼이 반드시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딩크족(Double Income Not Kids)과 같이 결혼생활이 자녀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변화하는 경향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녀 양육에 비용이 발생하여 큰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 양육 비용은 의료・보육・(사)교육 등에 관한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경제적 비용, 돌봄,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한 시간 비용, 출산・양육으로 인한 고용 등에서 기회비용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미시적인 원인들은 개인 또는 부부가 출산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출산은 미시적인 원인들 뿐 아니라 거시적인 사회구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일자리 부족과 고용 불안정, 높은 주거비용, 과도한 교육 경쟁(학력주의와 학벌주의 만연), 양성 불평등, 사회규범 및 가치관의 변화 등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요소들이다. 미시적인 요인들 대부분 거시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고용에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 만연은 사교육비를 증가시켜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높이고 있다

□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국가로부터의 교훈

○ 이와 같이 저출산의 원인들이 명백하게 규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은 극복이 가능한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실례로 서구 국가들 중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한 국가들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15년 이상 저출산 대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오히려 더 낮아져 최근에는 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은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에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들이 누락되어 있는 문제, 필요한 정책들이 포함되고 있을지라도 사각지대가 크거나 급여 등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 이와 관련, 초저출산현상을 멈추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근본적인 노력이 긴요하다.

○ 첫 번째로 과도한 경쟁사회를 지양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을 개혁하여야 한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만연하는 저출산 원인들은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OECD 국가나 동유럽 국가들 일부도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 사회에서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치닫고 있는 점은 직접적인 저출산 원인들 이외의 요소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단기간에 이룩하였던 고도 경제성장의 후유증으로 삶의 목표가 성공이나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 집중되었으며, 이를 위해 어린 시절부터 무한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유 없이 쫓기고 있다. 이로 인해 자녀 양육은 무한 경쟁의 연속선상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행복보다는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 개혁을 통해 그간 관행으로 고착화된 학력, 학벌, 젠더, 출신 지역 등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불식시키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학력이나 학벌 등을 이유로 한 고용기회나 승진 및 임금 등에서 차별을 없애고, 대신 능력을 우선시하는 원칙이 통용되도록 한다.



〈그림 3〉 프랑스 합계출산율 추이와 대책 변천

○ 두 번째로 자녀 양육의 생애주기와 연계된 사회구조 및 관행(문화)을 개선하는 것이다.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고, 초장기 저리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려 자기 집 마련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노후가

보장되도록 공적보장체계를 강화하여 생애과정에서 자녀양육과 노후대비가 충돌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 및 규범에 관한 접근도 중요하다. 교육과 경제활동 참여도가 높아진 데다가 고용 불안정, 결혼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 결혼이 더욱더 지체되면서 미혼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동거 등 사실혼적 관계가 증가하고, 이들로부터 출산이 발생하기도 한다. 서구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들을 제정, 시행해오고 있다.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te civil de solidarit←, PACS), 독일의 생활동반자관계법(Lebenspartnerschaftsgesetz), 스웨덴의 삼보법(samboavtal), 네덜란드의 동반자등록(geregistered partnerschap)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동거 커플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동거 커플이 법률혼으로 이행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인공임신중절 예방, 영유아 유기・학대, 아동빈곤의 세습화 등을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 세 번째로 미시적인 접근에도 충실해야 한다. 미시적인 접근에는 필요한 정책들을 신규 도입하는 것은 물론 기존 정책들의 수준을 현실화하여야 과제들이 포함된다. 우선 자녀 양육 지원은 대부분 미취학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임신・출산 의료지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돌봄, 보육 등이 해당된다. 최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돌봄이 확대되고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이후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은 단절된 상태이다. 서구사회에서와 같이 자녀 양육을 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수당, 교육수당 등을 16세 또는 18세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도 월 10만 원에서 2~3배를 증액하여 물가 등과 연동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 현행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은 사각지대, 충분성 결여,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효과성을 담보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즉, 부모의 시간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공무원이나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정된다.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경우) 등 일정한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해서는 출산

급여(50만 원, 3개월)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방법으로 근로 방식이나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부와 모가 육아휴직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 이용 기간을 6개월, 9개월, 12개월, 18개월 등으로 구분하고, 이용 기간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휴직 등 직장 경력의 공백을 전제로 하는 제도들 이외에 일하면서 육아를 할 수 있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육아재택제도 등을 활성화하여 돌봄 공백과 경력단절의 두려움을 해소해주도록 한다. 이러한 제도들과 어린이집 이용 시간 등 간 연계를 강화하여 시간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한다. 무엇보다도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 우리나라는 이미 20년 이상 동안 초저출산현상(합계출산율 1.3명이하)을 겪고 있다. 적어도 당분간 '저출산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저출산 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시작할지라도 언제부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느 수준까지 출산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어렵다. 결국 우리나라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고, 고령화될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 대책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크게 학교 붕괴, 병력자원 부족, 노동력 부족, 사회보장 부담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고출산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위해 건립하였던 학교 시설과 교사 양성 인프라(교육대학 등)는 과잉 시설이 되면서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다. 폐교는 단순하게 잉여 시설의 처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폐교로 아동이 있는 가족은 그 지역으로 이주해오지 않을 것이며, 아동들을 상대로 하는 가게나 시설 역시 폐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폐교는 지방

소멸을 유발하고 가속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교육행정 효율성 등에 불리한 학생희소학교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중 또는 중·고 통합학교나 학교 간 통합수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동시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대학과 산업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과감하게 늘릴 필요가 있다. 종합대학이 보편적인 대학 체계를 일부 단과대학 중심의 특성화 대학으로 전환하여 학생 수가 적으나 강한 대학들이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배치될 필요가 있다.

- 출생아 수 감소는 징병 대상 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병력자원 부족을 초래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등을 이용하여 병력 대체용 첨단 무기(전방 감시 등)를 개발하고, 기술병 등 일정한 자원에 대해서는 모병제를 도입하는 이른바 혼합병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 생산가능인구(15~49세)가 감소하여도 베이비붐세대(1955~1974년 출생 인구)가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어 당분간 노동력은 공급과잉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베이비붐세대 대부분이 노동시장에 이탈하는 2030년대 중반경부터 수요에 비해 노동력 공급이 본격적으로 부족하기 시작할 것이다. 노동인구의 구매력이 노인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노동력 부족은 생산 인구부족뿐 아니라 소비 인구 부족 즉, 내수 위축으로도 이어져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출산율 회복이 필수적이다. 다른 한편으로 잠재 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50%대에 머물고 있는 여성 고용률을 스웨덴 등 선진국의 수준(70~80%대)으로 높이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차별 불식,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고령인구의 학력과 직업력이 높아지고 건강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년 연장 내지 폐지를 통해 고령인구가 보다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남아서 역할을 하도록 한다. 외국인 노동력 유입도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미 중소기업, 농업 등에서는 내국인의 3D 업종 기피 등으로 인하여 노동력이 부족하며, 이러한 빈자리를 단기 외국인 노동자로 해소하고 있다. 미래에는 단기 외국인 노동자들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동남아 국가 등도 이미 저출산과 고령화가 시작되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자국의 노동자들을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영주 목적의 장기 이민자의 유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최근의 초저출산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여성인력이나 고령인력만으로 필요 인력 내지 안정적인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일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로 갈수록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에서 지식기반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민자들도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에 편승하고 자신들은 고령화된다면 오히려 인구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회통합 비용이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의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 이민자 유입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서구의 많은 연구들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민정책은 실효성이 높지 않음을 지적해왔다. 실제 서구 국가들은 제조업중심의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억제하고, 우수 인력 중심으로 이민을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나 이들이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사회보장 부담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인인구 증가로 연금 수령 인구는 증가하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인구는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연금기금은 고갈될 것이다.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역시 보험료 이용자는 증가하나 납부자는 감소하여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여야 하나, 보다 근본적인 방법으로 인구고령화 수준이 30% 등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출산율을 회복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정년 연장을 통해 적어도 60대 인구가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의 수급자적 위치에서 납부자적 위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출산율 회복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은 양자택일이 아닌 양자병행 과제

○ 최근 한국 사회에서 출산율이 0명대로 급락하면서 출산율 회복에 대한

회의감이 증가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출산율 회복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 약화되고 대신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적응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출산율 회복 없는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은 높은 비용과 고통을 수반할 것이다. 그렇다고 출산율이 단기간 내 급격하게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구변화에 대한 적응을 소홀히 할 수 없다. 결국 출산율 회복과 인구변화에 대한 적응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구하여야 할 사회 목표들인 것이다. 출산율 회복은 인구변화 적응 비용을 줄이며, 인구변화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예를 들어, 노후 보장 등)은 출산율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3.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도와 정책 논점

-국회미래연구원(2023. 5.)-

□ 자산 불평등은 세계 주요국에서 경제적으로 불평등을 구성하는 주요 축으로 대두

○ 생산성과 경제성장의 둔화로 소득이 정체하는 한편 자산가격의 급등이 계층 이동을 제약하면서 자산 보유가 경제적 계층 이동을 제약하는 현상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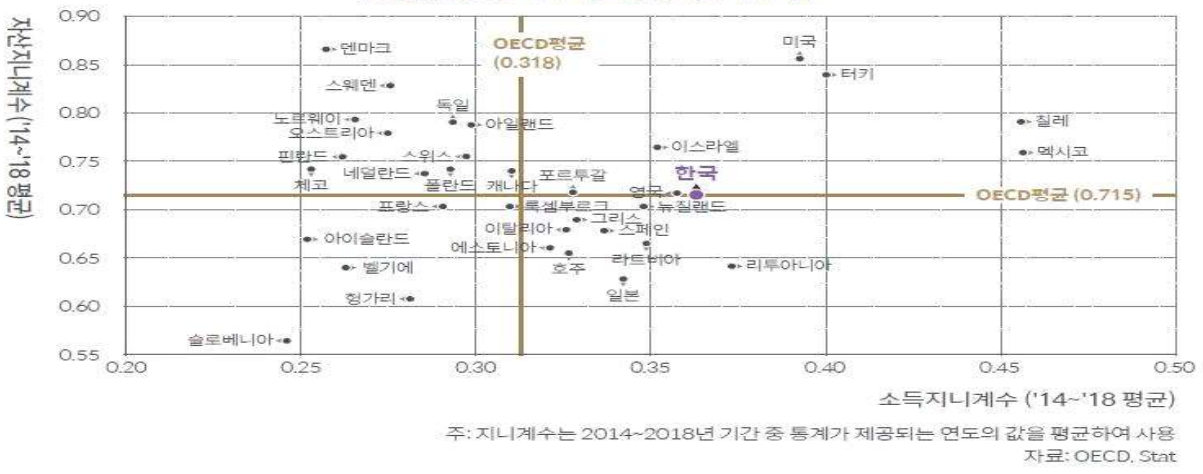
- 부동산이나 금융 등 자산 불평등을 소득 불평등과 함께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주요한 축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회계층을 연구하는 사회학 영역에서는 익숙한 관념
- 전통적 경제학은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성(즉 기여분)만큼 가져가는 것을 효율적이고 '공정'(fair)한 분배로 규정하기 때문에 자산 불평등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음

□ OECD 국가 비교를 통해서 본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도

○ 경제적 불평등도에 따른 국가 유형은 Esping-Anderson의 소득재분배 유형과 Schwartz and Seabrooke(2009)의 금융제도 관련 유형을 결합한 네 가지로 구분하여 평가 가능

- 소득분포는 처분가능소득을 사용하므로 시장소득 및 국가별 재분배 정책의 강도를 반영하는 한편, 자산분포는 국가별 경제·금융시스템을 통한 시장에서의 경제 활동을 반영

[그림1] OECD 국가의 소득 및 자산 지니계수



주: 지니계수는 2014~2018년 기간 중 통계가 제공되는 연도의 값을 평균하여 사용
자료: OECD. Stat

○ 한국은 소득 불평등도가 높고 자산 불평등도가 낮은, ‘동아시아형’ 국가군에 속하였으나 최근에는 처분가능소득의 불평등도는 낮아지면서 자산 불평등도는 높아지는 변화가 진행 중

-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불평등도는 미국, 멕시코, 터키보다는 양호하지만 OECD 국가 중 높은 편으로 영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과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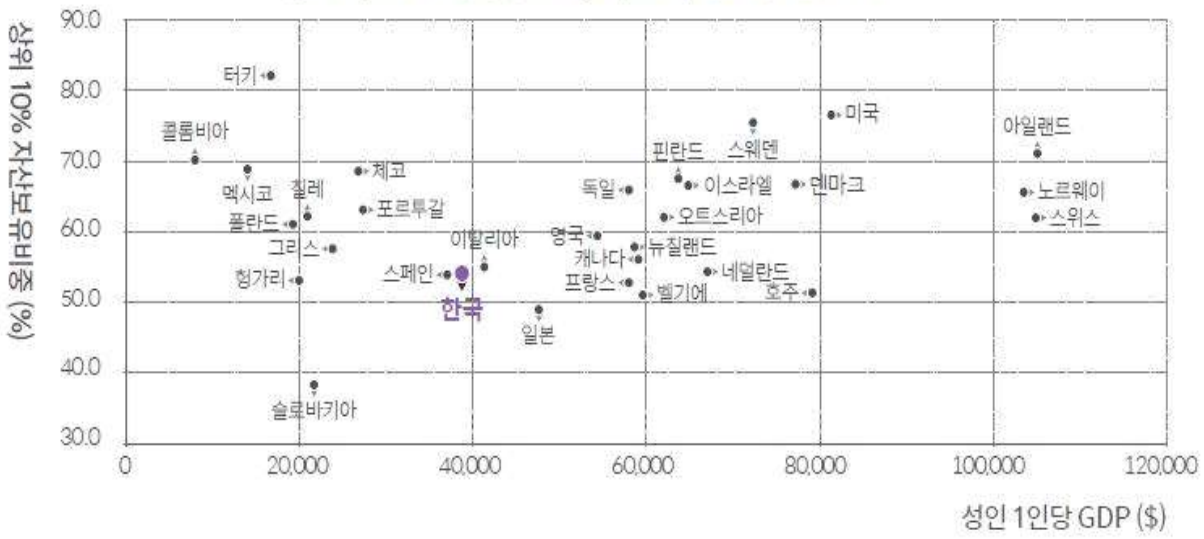
○ 소득 수준대별 자산 불평등도 특성: U자형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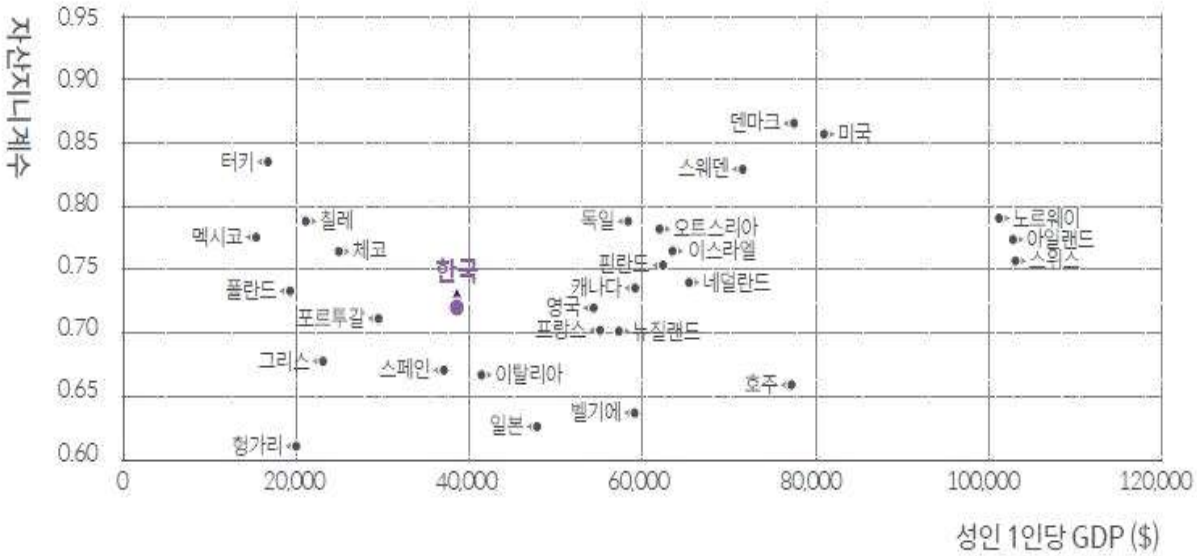
- OECD 국가의 사례를 보면 일정 정도의 소득수준까지는 상위 10% 자산보유 비중 및 자산 지니계수로 평가한 자산 불평등도가 하락한 반면, 성인 1인당 GDP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자산 불평등도가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소득을 조세정책 또는 재정지출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도는 국가별 재분배정책의 결과를 반영하며 자산의 경우 재분배 정책의 정책 지표로 거의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 ‘시장’의 분포를 그대로 보여줌

- 소득 수준에 따른 자산 불평등도의 U자형 분포는 소득 수준의 상승 ⇒ 경제성장률 둔화 ⇒ 부/소득 배율 및 자본소득 비중 상승이라는 피케티의 설명(자본주의 제1, 2법칙)과 일치

[그림2] OECD 국가의 소득 수준(GDP)대별 자산 불평등도





주: 2018년 기준이며 자산 지니계수는 [그림 1]과 동일 / 자료: OECD, stat; Credit Suisse, 「Global Wealth Databook」

□ 2010년대 이후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전개 방향

○ 2010년대를 거치면서 소득 불평등도의 방향은 국가별로 다양한 반면, 글로벌 자산 가격 폭등의 영향으로 OECD 대부분 국가의 자산 불평등도는 악화됨

- [그림 3]은 2010년대 초에서 말기까지 소득 지니계수의 변화분(X축)과 자산 지니계수의 변화분(Y축)을 보여줌

○ 2010년대 소득 불평등도 변화방향

- OECD 36개국 가운데 19개국이 소폭 개선되고 나머지 17개국은 악화
- 한국은 불평등도 수준은 여전히 높으나 2010년 이후 OECD 국가 중 소득 지니계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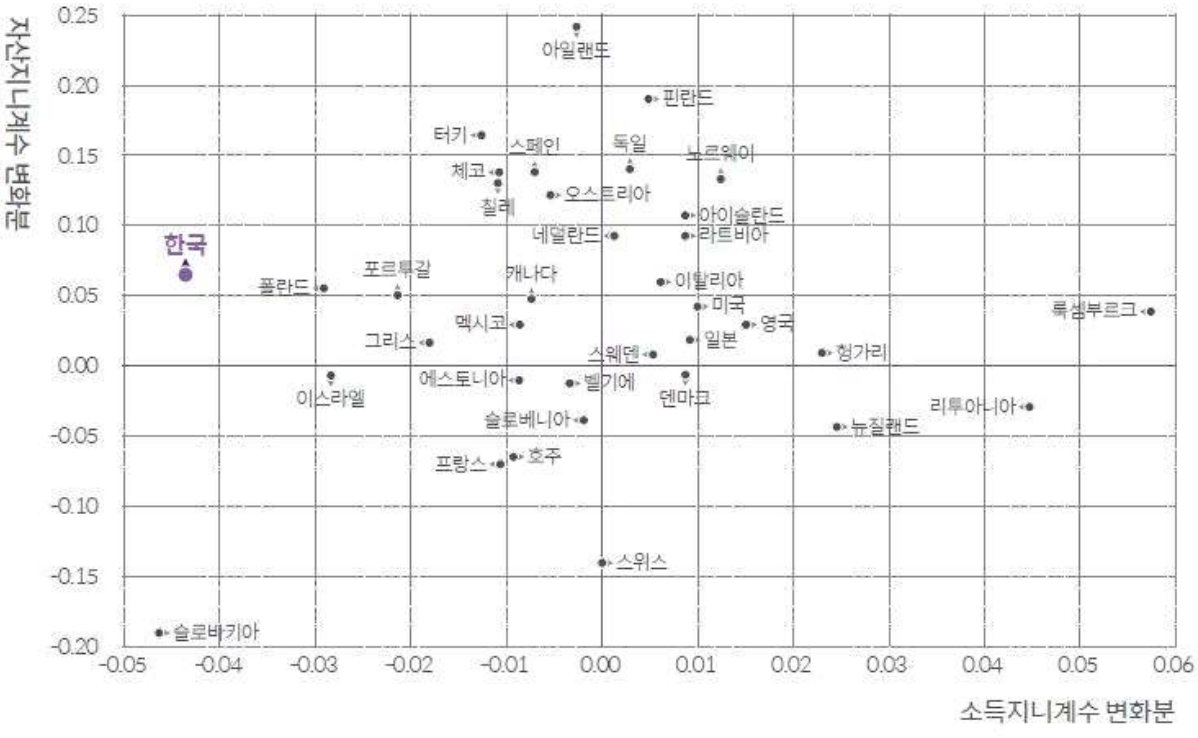
○ 2010년대 자산 불평등도 변화방향

- 36개 국가 중 25개 국가에서 자산 불평등도가 크게 악화되었으며 불평등도가 유의미하게 완화된 국가는 스위스,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에 불과 처분가능소득 불평등도는 국가별 재분배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가 가능하였으나 자산 지니계수는 재분배정책이나 금융체제 유형에 상관없이 대부분 악화

○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정책의 확대로 인해 가처분 소득으로 평가한 소득 불평등도는 낮아졌으나 자산 불평등도는 악화

- 자산 불평등의 절대적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진행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음
- 특히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75~80%에 달하는 만큼 한국에서의 자산 불평등은 부동산 소유 불평등에 기인한 바가 큼
- 부동산시장으로 지나치게 많은 유동성이 집중하면서 부동산은 가계 부문의 자산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계층 이동성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을 제공

[그림3] 2010년대 OECD 국가의 소득 및 자산 지니계수 변화 방향



자료: OECD Stat

주: 1) 자산 지니계수는 2010년과 2018년의 차이를 계산한 값임. 소득 지니계수의 경우 2018년(또는 2017년)에서 과거 추정치(대부분 2010년 또는 2011년)를 차감한 값임. 한국의 소득 지니계수는 2015~2017년 기간의 변화분임.

2) 1사분면: 소득 및 자산 불평등도 모두 악화, 2사분면: 소득 불평등도 악화, 자산 불평등도 개선, 3사분면: 소득 및 자산 불평등도 모두 개선, 4사분면: 소득 불평등도 개선, 자산 불평등도 악화

□ 자산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의 주요 논점

○ J. 스티글리츠는 불평등 그 자체가 아닌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평등의 심화를 문제 삼으며 공정한 룰을 통해 지대를 근절하고 생산 기여도에 상응하는 소득배분을 불평등 문제의 해법으로 제안

-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시장 불평등이 정치 불평등을 만들고, 정치는 시장에서의 게임의 룰 및 요소 소유자 간 관계와 규범을 더욱 불평등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정치 시스템에 의한 불공정 구조가 지대 추구 행위와 불평등에 책임이 있다는 것

○ T. 피케티는 요소배분 과정에서 시장이 공정하게 기능하는 것만으로는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

- 총요소생산성 정체로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경제성장률이 금리보다 낮아지는 조건하에서 자본소득 배율(국민소득 대비 일국의 자본 총량) 및 전체 소득에서 자본의 몫인 자본소득 비중 상승
- 즉 성장 둔화가 소득 대비 부의 배율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다시 원천(노동, 자본)별 소득의 편중성을 심화시키는 자본주의 동학하에서 자산은 소득 불평등의 원인을 제공
- 자본과 노동 사이에 근본적 비대칭성이 내재하기 때문에 전통적 경제이론이 규정하는 불공정성이 제거되고 시장경쟁에 기초한 요소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라는 '자본주의'의 경향성은 피하기 어렵다는 것

○ 자산 불평등을 자본주의에 내재한 문제로 규정하는 학자들은 경제적 불평등 악화의 해소 또는 완화를 위해 자산과세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함

- 자산과세를 통해 소득과세를 보완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모색되고 있으나 아직 그 방향성에 대한 합의는 개념적, 제도적으로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상태
- 유럽의 부유세, 글로벌 자본세(global capital tax), 포괄적 소득과세('소비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한 과세원리) 등이 논의되어 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함

○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인식하에 부동산 소유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보유세를 적극 활용

- 부동산세제는 유럽식 부유세의 한계인 조세회피로 인한 세원의 해외 유출에서 자유롭고 저성장에 따른 소득세, 소비세 등의 세수 감소를 보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는 미실현소득을 경제적 능력 지표로 삼는다는 점, 부채에 대한 과세, 개인과 법인 간 과세체계의 차이, 금융자산·특허권 등 기타자산과의 형평성, 부동산 가격 평가체계의 불완정성과 불형평성 등 과세체계 상 다양한 한계를 가짐

○ 결국 금융이나 부동산에 대한 부유세를 통해 자산 불평등 문제를 풀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금융투자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실현소득에 대한 형평한 과세 체계 정립이 보다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한 정책 대안이라 할 수 있음

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부산의 대응

-부산연구원(2023.4)-

□ 국내외 현황

○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건이 발생 이후 약 10년 넘게 원전 부지 내 저장 중인 오염수가 저장탱크의 약 96%를 수준인 포화상태로 2023년 7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계획함

○ 국내외 8개 원전 오염수 확산 시뮬레이션 연구결과는 방류량과 기간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지만 부산인근에 유입되는 농도는 동일하게 무해한 수준의 결과를 보임

- 해양환경방사능조사에 따르면, 1994~2022년까지 해양환경방사능 농도는 거의 일정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부산인근 해양은 전국 평균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관련 불투명한 정보공개와 원전 오염수 방류로 해양생태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 등에 대해 경계할 필요성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방류 계획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물론이며 일본을 둘러싼 환태평양 주변국에서 큰 우려를 표명함

○ 부산시는 5개 지자체(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 실무회의 실시 및 부산시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행동하고 있으며, 2022년 조직된 부산시 T/F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 마련 중이며, 2023년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대응체계(모니터링, 검역·검사 등)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 시민인식 조사

○ 부산시민 1,8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위험도는 응답자의 86.8%가 ‘심각하다’고 응답함

- 방사능의 건강 위협요인은 ‘원전에서 지속적인 방사능물질 생성’(35.3%)이 가장 높고, 이어 ‘무조건 위험’(34.1%)이라고 응답해 시민들의 방사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알 수 있음
- 부산시민이 방사선(방사능물질)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경로는

‘매스컴’(73.6%)이 압도적이며, 다음으로 ‘인터넷/SNS’(15.1%)로 나타남

○ **(수산식품 영향)** 원전 오염수 방류 후 시민들은 수산식품의 월평균 구매금액을 방류 전 대비 56.9~57.5% 줄일 것으로 추정됨

- 수산식품의 원산지별 구매 영향 중 ‘줄일 것이다(변화없다 이외)’라고 응답한 비중은 “국내산” 77.2%, “수입산” 91.0%, “일본산” 96.5%로 수산식품 소비위축이 예상됨
- 수산식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이유(중복응답)로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결과 및 정화 계획 불신’(93.7%)이 가장 높고, 이어 ‘방사능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기 때문’(62.4%)이라고 응답함

○ **(해양레저관광 영향)** 원전 오염수 방류 후 시민들은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연평균 소비액을 방류 전 대비 53.1~57.6% 줄일 것으로 추정됨

- 해양레저관광은 “부산”과 “타지역”에서의 소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응답이 각각 26.2%와 29.1%로 가장 많음
- 해양레저관광의 형태별 소비 영향은 ‘해양인근 숙박’ 및 ‘해변·해안 축제’는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응답이 약 25%(24.6~25.3%)로 가장 높음
- 반면, 직접적인 해양레저 분야(서핑, 스쿠버다이빙, 해수욕 및 수영, 보트 및 카약, 요트 및 유람선, 바다·갯바위 낚시)에서는 ‘소비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약 30%(26.1~33.2%)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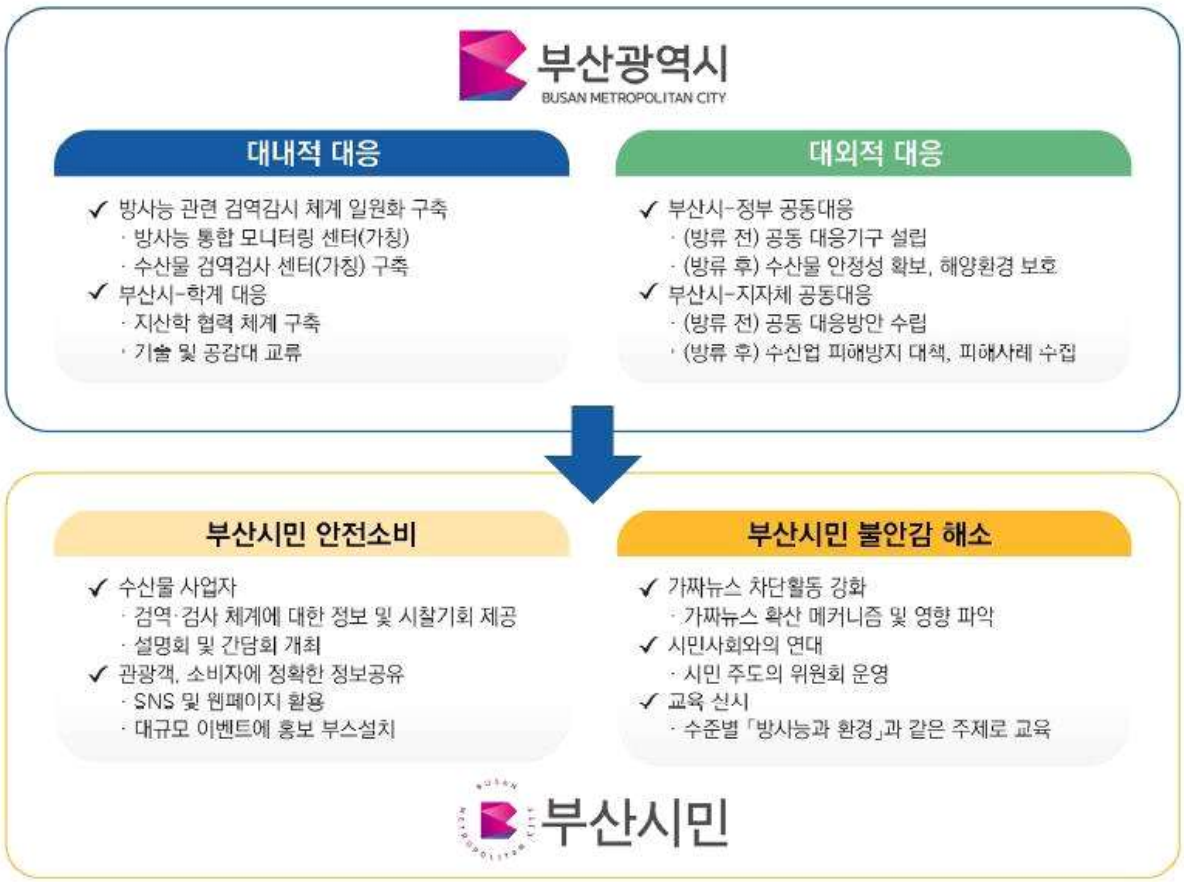
○ **(부산시 대응 인식)** 부산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름”이 50.7%로 가장 높아 부산시의 대응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시민들은 부산시가 대외적 필요 대응책으로 ‘지속적인 방류 중단요구’가 58.4%로 가장 필요하다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주변국과 협력하여 공동 조사 및 방류 중단 요구’가 49.5%로 나타남

○ 대내적 필요 대응책으로 ‘수입산 검사 및 검역’, ‘원산지 표시 강화’, ‘품질인증제도 강화’ 등의 순으로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함

○ 부산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 (부산시 대내적 대응방안) 방사능 관련 검역·감시 체계 일원화 구축 및 부산시-학계 대응, ▶ (부산시 대외적 대응방안) 부산시-정부 및 부산시-지자체 연계 대응,

▶ (부산시민 안전소비) 수산물 사업자 및 관광객·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공유, ▶ (부산시민 불안감 해소방안) 가짜뉴스 차단활동 강화, 시민사회와의 연대,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나가야 함



5.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시사점

-보험연구원(2023. 5.)-

□ EU 및 미국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 기후위기 심화로 탄소중립 경제 전환에 필수적인 청정 신기술과 에너지 산업이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EU 및 미국 중심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도입됨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핵심 기술 관련 글로벌 시장이 6,500억 달러(약 870조 원)로 현재보다 3배 이상 성장하고 고용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EU는 청정 신기술 혁신 촉진 및 관련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계획'을 추진 중임

- '탄소중립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계획'의 중심이 되는 내용은 ❶ 예측가능하고 단순한 규제환경, ❷ 녹색금융 재원 조달 속도 향상, ❸ 녹색 전환과정의 직업기술 강화, ❹ 공급망 관련 공정경쟁과 자유무역임

○ 특히 EU는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 기술을 지원하고, 관련 상품의 EU 내 제조를 촉진하면서 에너지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재편을 목적으로 『탄소중립산업법』 도입을 추진함

- 관련 규제를 정비하여 신기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예측가능하게 만들고, 'One-stop-shop' 개념의 행정 창구 단일화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 기술의 시장진입을 지원함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태양광, 풍력터빈, 히트펌프, 배터리, 전기분해장치 등 8대 탄소중립기술 그룹을 선정하고 이들의 EU 역내 제조비율 목표를 연간 수요의 40% 이상으로 제시함

○ 미국은 2022년 8월 입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세제 혜택, 대출 등 다양한 정책도구를 활용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에너지와 공급망 안보를 강화함

- 주거 부문의 녹색 전환 촉진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해 2030년까지

가정용 태양광, 에너지 저장장치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 지원할 예정임

- 특히, 미국 내 청정에너지 산업의 기술 투자를 촉진하고 신산업 공급망을 자국 내 및 무역협정 파트너 국가로 집중하기 위해 투자 세액공제, 보조금 등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 시사점

○ 우리나라는 EU 및 미국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볼 때 국내 수출기업을 포함하여 현지의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2050 탄소중립에 필요한 신기술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세제 및 금융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 지원이 요구

○ 국내 보험산업은 청정 신산업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전환기를 맞아 녹색 인프라 구축과 탄소중립 경제 전환과정에서 지속가능 경영 및 성장의 기회 발굴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일례로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 보험인수, 자산운용 등의 사업모형을 활용함

Ⅶ. 타 시·도 최근 시책

Ⅶ 타 시·도 최근 시책

1. 도단위 전국 최초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완료

-경상남도(2023. 6. 1.)-

- 1일 재난안전상황실 개소 현판식 및 재난대응 시스템 시연행사 가져
-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완료

○ 경상남도는 1일 경상남도 재난안전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될 재난안전상황실 개소 현판식을 가지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날 개소식에는 경상남도지사를 비롯한 도의회 부의장, 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제39보병사단장, 경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경남소방본부장이 참석했으며, 재난안전상황실 개소 현판식, 경과보고, 재난 발생 유형에 따른 재난대응 시스템 시연 행사를 가졌다.

○ 재난안전상황실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사고 발생 이후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재난대응기관 간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전파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각 기관과 부서별로 운영되던 영상정보를 통합 관제할 수 있도록 총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했다. 생활치안을 위해 전 시군에 설치된 지능형 CCTV 3만 8천여 대, 재해위험지역 CCTV 487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상황 CCTV 등의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다.

○ 또한, 방재·소방 공무원으로 구성된 재난전문인력이 영상정보를 기반으로 24시간 동안 4팀 12명(도 8명, 소방 4명)이 근무하며 재난관제를 실시하는 한편, 재난 발생 이후 신속·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재난대응기관으로 전파가 가능해져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 특히, 응급의료 종합컨트롤 타워와 연계를 강화해 병상정보 공유 등을 통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등 응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경상남도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선도적인 구축이 정부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반영 및 소개, 타 지자체 벤치마킹 문의 등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상남도 도지사는 “도, 소방본부, 경찰청 모두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안전에 관련된 투자는 다른 부분보다 훨씬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은 도민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경남도는 재난안전상황실 개소와 함께 드론, AI 등 첨단 기술과 접목한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 119 소방차량, 112 경찰차량 영상 정보 공유를 통한 행정, 소방, 경찰의 입체적인 재난대응 시스템 확대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국 최다

-전라남도(2023. 6. 8.)-

- 복지부 공모에 6곳 추가돼 11개 시군…양육 친화환경 기대 -

○ 전라남도가 보건복지부의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 공모에 전국 18개소 중 가장 많은 6개 시군이 선정돼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건강관리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해 상담, 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다.

○ 지난해까지 순천, 화순, 장흥, 해남, 신안 등 5개 시군에서 운영했으며 올해 추가로 선정된 광양, 담양, 고흥, 강진, 장성, 진도 등 6개 시군을 포함한 총 11개 시군에서 확대 추진한다.

○ 임산부 대상 건강평가 후 고위험군은 산전부터 아동이 만 2세가 될 때까지 전문인력이 방문해 건강상담, 양육환경 점검,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고 있다. 의료시설 기반과 정보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최근 늘어나는 고령·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체계적 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하다”며 “모든 시군으로 사업이 확대되도록 정책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전남도는 이밖에도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여 17만 원·남 9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초보 엄마아빠의 육아 고민을 덜어줄 원스톱 육아 정보서 발간

-서울시(2023. 6. 9.)-

- 서울시 25개 자치구 별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전자책 발간 -

○ 서울시는 지역 내 육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양육자의 육아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지원하는 원스톱 육아 정보 책자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를 전자책(e-book)으로 제작, 6월부터 배포한다.

○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는 120명의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가 직접 발로 뛰어 조사한 지역 육아시설과 최신 육아 정보(육아 서비스·제도)를 담아 25개 자치구별로 제작되었다. 양육자들은 자녀 성장 단계에 맞는 다양한 육아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육아시설의 정보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 아동 발달 단계에 따른 육아 정보뿐만 아니라, 육아 지원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 교육 기관 등에 대한 정보도 상세하게 담겨 있다. 또한 지역별 육아 시설의 위치, 특징, 운영시간 등을 안내하여 양육자들이 거주지 인근의 다양한 육아 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새롭게 발간된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는 서울시 누리집 전자책(e-book) 및 우리동네 키움포털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PDF 문서로도 횟수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다.

○ 아울러,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육아 고민은 자치구별 3~6명씩 서울시 총 120명이 활동하고 있는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는 알고 싶은 육아 궁금증이 있을 때, 출산·전입가정이라 우리 동네 정보가 부족할 때, 마음이 맞는 육아모임에 참여하고 싶을 때 맞춤형 육아정보를 전달하고 건강한 양육을 위해

정서적 지지 및 양육력 향상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보육 서비스이다.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육아정보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양육자가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초보 엄마아빠들이 육아정보를 일일이 찾는 수고를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4.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나선다

–광주광역시(2023. 6. 1.)–

- 6월 1일~7월 15일 온라인 설문… 2020년 1차 이어 2차 조사 -
- 은둔상태 당사자·가족 발굴해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광주광역시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 마련과 지역의 은둔형외톨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2차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는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1차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이다.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욕구 등을 파악하고 지역 내 은둔형 외톨이의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번 조사는 1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45일간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6개월 이상 집안에만 머무르며 외부(가족 등)와 단절된 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그 가족, 과거 은둔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 총 600명 발굴을 목표로 추진한다.

○ 조사내용은 ▲조사 대상자 성별·나이 ▲은둔 기간·계기 등 은둔경험 ▲식사빈도·수면생활 등 일상생활 ▲신체·정신건강 ▲관계와 도움, 서비스 및 활동 욕구 상담,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조사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 형식으로 은둔 형외톨이 온라인 설문조사지 QR코드 또는 인터넷주소(http://joongang.com/23/142)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이번 조사는 지역의 전문연구기관인 (재)광주복지연구원에서 맡았고 설문조사결과 희망자에 한해 심층면접도 실시한다. 오는 11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해 이를 기반으로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 광주시는 지난 2022년 4월 전국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설치,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활동을 통해 당사자와 가족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은둔 당사자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과 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 한편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실시한 제1차 실태조사를 통해 349명의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했다. 당시 응답자 가운데 20대와 30대가 51.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은둔기간은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31.2%로 가장 많았다. 은둔 생활의 계기는 취업 실패와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 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장은 “은둔형 외톨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의 문제이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광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혼자만 고민하고 있을 은둔형외톨이와 가족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5. 충남교육청, 올 하반기 중 사고도구어 활용 '온생각' 시스템 보급

-충남교육청(2023. 6. 2.)-

- 시중 초중등 교과서 361권 기반 사고도구어 1,387개 추출해 수준별 분류 -
- 학생 문해력 향상에 필요한 학습자료와 시스템 개발·보급 계획 -

○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결손 해소와 문해력 향상 지원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온생각」을 금년 하반기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고도구어'란, 사고 및 논리 전개 과정을 담당하며 글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언어능력(의사소통)의 신장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단어를 말한다.

○ 교육청에서는 인하대학교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교과서 기반 등급별 사고도구어 목록을 개발했는데, 구체적으로 초·중등 교과서 총 361권의 내용분석(총 어절 수 2,665,037개, 총 단어 수 376,995개)을 통해 사고도구어 1,387개를 추출했으며, 사고도구어의 빈도 및 난이도에 따라 1~4등급으로 수준을 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이해➡확장➡활용➡적용'의 4단계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교육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사고도구어 활용 수준 진단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 제공 ▲진단 및 학습활동 이력 관리 등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온생각」 시스템을 제공할 방침이다.

○ 이와 관련해 교육청은 2일(금) 예산에서 '교과서 기반 등급별 사고도구어 목록 개발 및 사고도구어의 의미와 활용 지원 자료 개발 방향에 대한 보고회'를 운영했다.

○ 충남교육감은 "충남 학생의 문해력과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진정한 의미의 참학력을 갖춘 미래인재로 키워가기 위해, 사고도구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학생들이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도록 도와주는「온생각」시스템을 완성하여 제공하겠다." 고 전했다.

Ⅷ.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Ⅷ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대학혁신지원(R&D)의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 반영 필요

-국회 예산정책처 교육위원회(2023년 예산안 분석/2022. 10.)-

□ 현 황

○ 대학혁신지원(1유형)은 대학혁신지원(R&D)의 내역사업으로, 4년제 대학이 자율 혁신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7,53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A)	추경(B)		B-A	(B-A)/A
대학혁신지원(R&D)	695,122	795,000	795,000	858,284	63,284	8.0
대학혁신지원(1유형)	695,122	753,000	753,000	753,000	0	0

○ 2022년에는 포뮬러 사업비 6,530억원(86.7%), 적정규모화 지원금 1,000억원(13.3%)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예산안에는 포뮬러 사업비 5,530억원(75% 내외)와 성과인센티브를 약 2,000억원(25% 내외)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대학혁신지원(1유형) 예산안 편성 내역]

	기본지원금(포뮬러)		추가지원금		합계
2022	6,530억	+	적정규모화 지원금 1,000억	=	7,530억
2023	5,530억 내외 (사업비 70~75%)	+	성과 인센티브 2,000억 내외 (사업비 25~30%)	=	7,530억

자료: 교육부

□ 분석의견

○ 대학혁신지원(I유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의 질적 성과가 부족하여 「2022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중간평가(자체평가) 상위평가 적절성

점검」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았으므로, 사업 목적에 따른 질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개발하는 등 성과관리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3년 주기로 성과 평가하여 예산 조정 및 사업개선을 추진하는 제도이다. 각 부처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부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상위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와 차년도 예산간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 ‘우수·적절’ 사업은 예산 증액 검토 요소로, 자체평가 ‘미흡’ 또는 상위평가 ‘부적절’ 사업은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한다.
- 2022년 성과평가에서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R&D) 사업이 평가대상이었으며, 교육부는 자체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부여하였으나, 과기부 상위평가에서는 ‘부적절’ 판정을 받았다. 과기부는 상위평가에서 자체평가 등급부여(우수)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정량적 실적 위주이며, 질적 성과의 객관적 근거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부적절’ 판정을 하였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에서 성과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였거나 소관 분야의 문제 해결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식 또는 기술 등 확보’ 등으로, 논문 게재, 특허 실적 등을 근거자료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 반면,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기본역량 강화 및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에서는 스스로의 여건에 따라 혁신과제를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총사업비 중 교육이 7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연구가2.5%, 산학협력이 5.5% 수준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 분야별 자율혁신과제 사례 및 투자비율]

분야	자율혁신과제 주요 사례	총 사업비 내 투자비율('21)
교육	· (교육과정 혁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전공 내 특화트랙 운영, 융복합 전공, 마이크로디그리 개설 등 학사구조 유연화, 미래사회 수요 반영 전공·교양 교육과정 개발 및 컨설팅 등 · (교수법 개선) 플립러닝, 문제 해결형 학습, 캡스톤 디자인, 학습자 중심 교수법 개발 · 피드백 제공 등 · (교육환경개선) 비대면(AR/VR), AI기반 교육 등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등 · (학습 지원) 온라인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AI 기반 학생 학습상태 진단-학습활동 설계-성과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 학생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핵심역량에 기반한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맞춤형 학습 컨설팅 지원 등	78.3%
연구	· 교내 연구비 지원 확대, 지역 문제해결 연구 추진 등	2.5%
산학협력	· 현장기반 채용 연계 프로그램 운영, 기술이전 · 특허 출원 관련 지원	5.5%
기타	· 학내 자율혁신 성과관리 체계 구축, 코로나19 관련 학생 심리정서 지원 등	13.5%

자료: 교육부

- 교육부는 이러한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핵심성과지표를 '교육여건'의 개선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대학별 혁신전략을 반영한 성과관리를 위해 대학이 자율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지표설정의 적절성 및 달성도를 확인하는 정도로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지표]

영역	지표별 평가내용	배점	비고
사업 추진 및 집행 실적	1. 사업 추진 실적		
	• 대학혁신전략에 따른 과제 수행 실적	10	정성
	2.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 재정투자계획 대비 집행의 적절성	10	정성
	• 사업계획 대비 예산집행률	5	

핵심 및 자율 성과 달성도	3. 핵심성과지표의 달성 정도			
		• 재학생 충원율	5	정량
		• 전임교원 확보율	5	
		• 교육비 환원율	5	
		• 총 강좌수	10	
	4. 자율성과지표의 달성 정도			
		• 자율성과지표의 적절성	10	정성
		• 자율성과지표의 달성도	10	
		• 프로그램 운영 성과 및 우수사례	10	
사업관리 및 환류	5. 사업관리 및 개선 노력의 적절성			
		• 사업관리조직 및 의견수렴 제도 운영의 적절성	7	정성
		• 자체평가시스템 운영 및 문제점 분석의 타당성	5	
		• 사업개선 방안의 적절성	8	
계			100	

자료: 교육부

- 그러나 재학생 충원율을 제외하면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총 강좌수는 재정투입 측면을 반영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질적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율성과지표의 달성 정도의 경우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자율성과지표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이를 종합한 질적 성과를 측정하지 않고 대학별로 사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 따라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지표 설정에서 사업 특성 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요구하는 논문, 특허 등 연구성과 관련 지표를 사업의 핵심지표로 설정하기 어려운 점, 대학 자율혁신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할 필요는 있으나, 그에 상응하여 이 사업에서 주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한 질적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 특히,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평가결과는 성과평가 인센티브로 연계되기 때문에 재정지원으로 달성한 성과에 질적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부는 지표별 획득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순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총 사업비 일부를 평가결과와 연계한 성과평가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2023년도 대학혁신지원(1유형) 지원액 구성]



자료: 교육부

- 이상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평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목적에 따른 ‘질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등 성과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계기성 행사 사업의 구체적 계획 수립 미흡 문제

-국회예산정책처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년 예산안 분석/2022. 10.)-

□ 현황

○ 계기성 행사 사업은 청와대 개방, 광복절, 개천절 등 특정한 계기에 맞추어 전통공연예술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2023년도 예산안에 1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3년도 계기성 행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A)	추경(B)		B-A	(B-A)/A
공연예술 진흥 기반 조성	63,423	48,607	54,143	32,043	△22,094	△40.8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2,985	2,800	2,800	4,220	1,420	50.7
계기성 행사	-	-	-	1,300	1,300	순증

□ 분석의견

○ **계기성 행사 사업은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13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므로, 동 사업은 예산 규모의 적정성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 계기성 행사 사업은 2023년도 예산안에 13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공연제작 9억 5,000만원, 미디어기술 2억원, 기타경비 1억 5,000만원으로 구성되었다.

[2023년도 계기성 행사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공연제작	950	- 전문인력 사례: 50 - 임차료: 50 - 방송제작: 600 (출연사례비, 방송인력비, 방송기획비, 무대제작비 등 포함) - 부대공연 제작: 250
미디어기술	200	- 미디어 제작용역: 100×2종
기타경비	150	- 운영비: 20 - 기념품 제작비: 80 - 웹페이지 제작·운영: 50
합계	1,3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에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부터 10억원을 전용(2022.5.4.)하여 '2022 청와대 개방특집 KBS 열린음악회'로 계기성 행사 사업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동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요예산의 항목별 구분 외에 계기성 행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사 주제와 세부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향후 전통과 공연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동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와 같이 계기성 행사 사업은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13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므로, 동 사업은 예산 규모의 적정성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3. 예비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 및 현 회계연도 집행내역 제출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위원회(2023년 예산안 분석/2022. 10.)-

□ 현황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자금으로서, 「대한민국헌법」제55조제2항 및 「국가재정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세부사업별 내역을 확정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하는 세출예산 과목이다. 이러한 예비비는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하는 목적예비비와 별도의 목적 지정없이 일반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일반예비비로 구분된다.

○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3,000억원(33.3%) 증액되고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000억원(△5.5%)이 감액된 5조 2,00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사업명	2021 결산	2022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A)	추경(B)		B-A	(B-A)/A
예비비	9,272,100	3,900,000	5,500,000	5,200,000	△300,000	△5.5
일반예비비	7,871,300	2,100,000	3,700,000	3,400,000	△300,000	△8.1
목적예비비	1,400,800	1,800,000	1,800,000	1,800,000	0	0.0

○ 예비비는 예산총칙 등에 미리 사용목적을 규정해 놓은 목적예비비와 그 외의 일반예비비로 구성되며,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안에는 목적예비비 3.4조원, 일반예비비 1.8조원이 각각 편성되었다.

□ 분석의견

○ **첫째, 2023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예비재원 소요가 2020~2022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예비비 예산은 편성·집행과정에서 행정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예비비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018년 이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편성 추이를 보면, 2018년 3조 500억원, 2019년 3조원으로 코로나19 이전에는 3조원 내외의 규모였으나, 2020년에 5조 6,100억원, 2021년에는 9조 7,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본예산 기준 3조 9,000억원, 제2회 추경예산 기준 5조 5,000억원으로 2020년과 2021년에 비해서는 규모가 감소하였다.

[2018년 이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편성 추이]

(단위: 억원)

연도	2018 예산	2019 예산	2020 예산	2021 예산	2022		2023 예산안
					본예산	추경	
합계	30,500	30,000	56,100	97,000	39,000	55,000	52,000
목적예비비	18,500	18,000	42,100	81,000	21,000	37,000	34,000
일반예비비	12,000	12,000	14,000	16,000	18,000	18,000	18,000

주: 2018~2021년도 예비비는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안 5조 2,000억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비비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예비비 규모(추경예산 기준)보다는 감소한 것이나,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 및 2019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규모이다.
- 또한, 총지출 대비 예비비 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과 2019년,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는 예비비 비중이 0.6~0.7% 수준이었으나, 2020년 추경예산 및 2021년 예산 기준으로는 1.0~1.6%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도 본예산 기준은 0.64%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나 2022년 추경예산을 통해 예비비를 증액하면서 예비비 비중이 0.81%로 증가하였다.
- 2023년 예산안의 총지출 대비 예비비 비중은 0.81%로 2022년 추경예산 기준과 동일하고, 코로나19 이전과 2022년 본예산 기준보다는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코로나19에 따른 예비재원 소요가 있을 수 있고 그 외의 예측하지 못한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과 비슷한 규모의 예비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2022년 4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되어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지급 등 예측하지 못한 소상공인 지원

소요가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코로나 팬데믹 종식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예측하지 못한 방역보강 재원소요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일반사업 예산과 달리 예비비는 국회에서 총액만을 심의하고 집행내역을 사후 승인하고 있어 일반예산보다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행정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고려할 때 필요 최소한으로만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로 국회는 2022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일반 예산사업 증액으로 예비 재원 소요가 감소하였다는 판단 하에 목적예비비 예산을 1.1조원 감액하였고,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심의과정에서도 유사한 사유로 4,000억원을 감액 의결한 바 있다.

[2018년 이후 총지출 대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비중]

(단위: 조원, %)

연도		2018 예산	2019 예산	2020 예산	2021 예산	2022 예산	2023 예산안
본예산	총지출	428.8	469.6	512.3	558.0	604.4	639.0
	예비비	3.00	3.00	3.40	8.60	3.90	5.20
	비율	0.70	0.64	0.66	1.54	0.64	0.81
추경[1]	총지출	432.7	475.4	554.7	604.9	679.5	-
	예비비	3.05	3.00	5.61	9.70	5.50	-
	비율	0.70	0.63	1.01	1.60	0.81	-

주: 1) 각 연도의 마지막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와 같이 2023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예비재원 소요가 2020~2022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본예산 기준 총지출 대비 예비비 비중 추이, 예비비 예산은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행정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예비비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정부는 국회에서 예비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현 회계연도 예비비 집행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 국회가 예비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내실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현 회계연도의 예비비 집행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정부는 해당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헌법」제55조제2항은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국가재정법」제52조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에 국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2021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은 2022년 5월 31일에, 2022년 예비비사용 현황은 2023년 5월에야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대한민국헌법」제55조제2항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차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한 조항이고, 「국가재정법」제52조는 예비비 사용 총괄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 제출·승인절차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해당 조항들이 현 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비공개 정보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 조항들을 근거로 현 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 또한, 국회는 예산안 심사 또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가 현 회계연도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검토한 후 문제제기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에 예비비가 제외되어야 할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예비비는 총액으로 편성되나, 예비비 사용계획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특정 중앙관서의 세출예산 사업으로 배정되면 집행단계에서는 일반사업 예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됨에도 일반예산과 달리 예비비의 집행내역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일반예산과 달리 예비비는 국회의 총액 심의만을 받고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이 없는 특성상 현 회계연도의 집행현황과 집행세부내역에 대한 검토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정부는 현 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내실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특정 시점 기준의 현 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Ⅸ.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Ⅸ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1.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 실태

-감사원 감사보고서(2023. 5.)-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2. 8. 8.부터 시작된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는 등 서울 도심지역 일대 주택·지하철·도로가 침수되어 반지하주택 침수로 4명 사망, 가로수 정비 중 감전으로 1명 사망 및 지하주차장 침수(탈락한 맨홀 뚜껑 추락 포함)로 3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지하철 역사(이수역 등) 침수·붕괴, 도림천 범람·산사태 경보발령에 따른 인근 주민 대피, 도로 침수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 등 재산피해가 발생

○ 최근에 기상이변 등으로 이러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적의 증가 등으로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지 못한 채 저지대로 집중되고, 도시지역 하수관의 통수능력(通水能力)이 충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복합지하공간이 확대되는 등 집중호우 시 위험도가 증가하여 기존 도심지 배수체계의 한계가 발생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등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침수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침수피해 우려지역이 사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처 간 연계가 미흡하여 침수예방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에 정부의 도심지 침수예방사업의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도심지 침수예방에 기여하고자 2022년 하반기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

□ 감사중점 사항

○ 도심지 침수는 해당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각종 침수예방시설이 유기적으로 계획·설치되어야 예방이 가능하므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침수예방사업의 선정 및 내·외수 침수예방사업의 부처 간 연계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

○ 이에 이번 감사는 도심지 침수예방사업을 대상으로 하면서 [표 1]과 같이 침수예방사업 선정, 침수예방사업 추진·관리 등 2개 분야에서 2개 사항을 중점 점검

[표1] 분야별 감사중점

구 분	분야별 감사중점
침수예방사업 선정 분야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침수예방사업 선정이 합리적인지?
침수예방사업 추진·관리 분야	· 부처별 침수예방사업 계획 등이 제대로 수립·추진되는지?

○ 이를 위해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계획 수립 등을 추진·관리하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의 적정성을 감사

□ 감사실시 과정

○ 실지감사에 앞서 2022. 9. 5.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언론 보도사항, 정책 연구기관 등의 각종 연구보고서, 국회 논의사항 등을 검토하였고, 도심지 침수예방사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점검도 병행함

○ 이와 같은 감사 준비 과정을 거쳐 2022. 11. 29.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총 19일간 감사인원 12명(외부 전문가 2명 포함)을 투입하여 행정안전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

□ 감사결과 처리

○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22. 12. 21.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 환경부 물환경정책관과 감사마감회의를 하고, 업무처리 경위와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후 감사원은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3. 5. 4.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함

□ 감사결과

○ 감사결과 아래와 같이 총 10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

(단위:건, 명)

구분	합계	통보	징계(인원 수)	주의
합계	**10**	**5**	**1(1)**	**4**
침수예방사업 선정 분야	3	1	-	2
침수예방사업 추진·관리 분야	7	4	1(1)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침수예방사업 선정 분야

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관리 미흡)** 지방자치단체가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 발생을 사유로 침수발생 또는 침수발생이 예상되는 주거 및 상가 지역 등은 제외한 채 도로, 하천 및 정비사업 구역 등에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한 데 대해 행안부는 이를 그대로 둠

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사업대상지 선정 부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순위를 정하여 정비사업을 신청하는 등 관리지침과 다르게 정비사업을 신청하고 있는데도 행안부는 이를 검토 없이 그대로 선정 또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도 행안부는 재해위험도, 피해이력지수 등 투자우선순위와 관련된 항목보다는 사업 필요성, 비용절감 효과 등 경제성 위주의 평가항목을 반영하여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 등 불합리한 평가방식으로 사업대상을 선정

(나) 침수예방사업 추진·관리 분야

① **(도시침수 분석용역 부실 감독 및 준공 등)** 부산시는 관내 도시침수 위험지역에 대한 분석용역을 하면서 해당 분구 면적에 대한 강우유출 해석을 하지 않거나 하수관망, 재해정보지도 등을 부실하게 구축한 것을 그대로 준공, 또한 용역업체가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내수침수 분석 계약업체에 무단 유출

② **(부처 간 침수예방사업 연계 미흡)** 행안부와 환경부는 각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지 선정과 세부 사업내용에 대한 공유 없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동일지역의 침수 대책이 중복 추진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

○ 이에 대하여 행안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할 경우에는 침수(예상)지역을 정확히 반영하여 지정·고시될 수 있도록 전문가 검토를 충실히 하고, 침수(예상)지역을 제외한 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한 때는 침수(예상)지역을 반영하여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며, 부산시장에게 부실 구축된 용역을 보완 조치하도록 하고, 공개가 제한된 정보를 유출한 용역업체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통보하며, 용역감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하는 등 총 10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함